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

제10회 월례발표회 자료집

제1발표: 순조 후반 헌종 연간 정국과 정치세력의 동향 - 효명세자
대리청정 시기와 이후 『推案及鞫案』에 실린 사건을 중심으로 -
(김정자, 연세대 법학연구원)

제2발표: 수도권 자료
(유승희, 연세대 법학연구원)

○ 일시: 9월 26일(토) 15:00 ~ 18:00

○ 장소: Zoom 회의

이 자료집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019S1A5C2A02082825)

목차

제1발표: 순조 후반 헌종 연간 정국과 정치세력의 동향 - 효명세자 대리 청정 시기와 이후 『推案及鞫案』에 실린 사건을 중심으로 - 4 (김정자, 연세대 법학연구원)	
제2발표: 수도권 자료 40 (유승희,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논문]

순조 후반 헌종 연간 정국과 정치세력의 동향*

- 효명세자 대리청정 시기와 이후 『推案及鞫案』에 실린 사건을 중심으로 -

김 정 자**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헌종 6년 윤상도 사건의 재론과 |
| 2. 효명세자 대리청정 시기 李寅溥, 李魯
近, 愼宜學 사건 | ‘벽파’계열·‘청론’계열의 분열 |
| 3. 효명세자 대리청정 이후 申允祿, 尹尙
度 사건 | 5.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 후기 ‘時派’·‘僻派’세력이라는 용어의 연원을 영조 후반기 노론 외척세력의 대립관계에서 찾기도 한다. ‘시파’는 노론 외척세력 중 혜경궁 세력과 연합한 北漢黨[=北黨]으로, ‘벽파’는 정순왕후 세력과 연합한 南漢黨·清明黨[=南黨]으로 설명하기도 한다.¹⁾ 한편으로는 영조 후반기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7731)

**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 정만조, 『영조임금의 업적』, 『영조대왕』,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김정자; 『英祖末~正祖 初의 政局과 政治勢力의 動向-英祖 46년(1770)경~正祖 元年(1777)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탕평정치와 재조명』, 태학사, 2011; 정만조,

보다는 각각의 시기를 달리하여 정조 4년 홍국영의 몰락 시기, 정조 8년 金夏材 사건, 정조 12년 노·소론·남인계 대신을 임명한 三相保畚 시기, 정조 17년 또는 정조 19년 이후 시기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²⁾

‘시파’는 외척세력을 포함한 특권세력과 연합하여 정국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벽파’는 ‘시파’ 세력을 비판하는 세력으로 나누어 보는 연구도 진행되었다.³⁾ 앞선 조선 전기·중기 훈척 세력을 비판하며 등장한 士林 세력 士類들의 ‘어진 사람을 숭상하고, 외척을 배척한다[右賢左戚]’는 이념을 계승해서 ‘벽파’세력은 ‘淸論’·‘淸議’를 주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권세력의 정치관여를 반대하며 ‘청론’·‘청의’를 주장했던 노·소론 세력 중의 일부 세력은 왕실과의 혼인으로 외척·척신세력으로 전신해 갔다.⁴⁾ 일례로, 외척이 된 홍국영과 연합한 ‘시파’ 세력을 논척하는 세력

『정조 치세의 정국동향과 정책추진』, 『정조대왕자료집』 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정만조, 『순조대의 정국 추이』, 『순조대왕자료집』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9 참조.

- 2) 박광용, 『정조 연간 時僻당쟁론에 대한 재검토』, 『韓國文化』 1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0; 이경구, 「18세기 “時”와 “俗” 관련 용어의 변화와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 15, 한국실학회, 2008; 박철상 외, 『정조의 비밀 어찰—정조가 그의 시대를 말하다』, 푸른역사, 2011; 정병설, 『권력과 인간』, 문학동네, 2012;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지음, 『정조와 정조 이후』, 역사비평사, 2017 참조
- 3) 이른바 시파니 벽파니 하는 말은 갑진년(정조 8) 겨울 유악주와 이노춘이 올린 상소의 ‘時’자에서 비롯되었다.···이육고 骨僻이니 肉僻이니 心僻이니 口僻이니 天地皆僻이니 하는 말이 생겨나더니 신유년(1801)과 병인년(1806)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하였다(심노승 지음, 안대희 김보성 외 옮김, 『자저실기』, 휴머니스트, 2014, 195쪽). 김정자, 위의 책, 2011; 『순조 전반기 정국의 동향과 李審度 獄事의 전말—『親鞫日記』와 『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각주 25) 참조.
- 4) 정조 시대를 지나며 ‘右賢左戚’을 주장하던 淸論士類의 핵심적 집안이 오히려 외척 세도가로 전신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전통적 산림 집안이 탕평정국 아래 외척가문이 되거나 대대로 벼슬을 하는 경화거족으로 전환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유봉학, 『개혁과 갈등의 시대—정조와 19세기』, 신구문화사, 2009, 63쪽. 유봉학,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참조). 19세기 정치사 연구는 오수창(『제 2장 정국의 추이』, 『조선정치사 1800~1863』 상·하, 청년사, 1990)과 김명숙의 책(『19세기 정치론 연구』, 한양대 출판부, 2004)과 임혜련의 논문(『순조 초반 정순왕후의 垂簾聽政과 정국변화』, 『조선시대사학보』 15, 조선시대사학회, 2007; 『19세기 垂簾聽政 研究』,

이 ‘청론’에서 나와 ‘벽파’ 세력이라고 여겨졌고, 이후 소론 세력 徐命善 등과 연합한 노·소론 ‘시파’ 세력을 논척하는 세력이 ‘청론’에서 나와 ‘벽파’ 세력이라고 여겨졌다. 이처럼 각각의 시기에 해당하는 ‘時論’·‘時議’를 논척하는 ‘청론’·‘청의’가 나와 ‘시파’를 논척하는 ‘벽파’ 세력이라고 여겨졌다면, ‘시’·‘벽’은 각각의 시기마다 정치적 입장과 세력이 변하고 정국의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뒤바뀌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

정조 후반 ‘청론’·‘청의’·‘벽파’였던 노론 沈煥之 등이 순조 초년 정순왕후 세력과 연합하여 ‘벽파 정권’이 되어 ‘辛酉獄事’를 일으켰다. ‘신유옥사’로 종친 세력과 노론 내 외척 세력, ‘시파’ 세력과 소론 내 사도세자 추숭 세력·남인 내 信西派 세력 등이 피해를 입었다.⁶⁾ 정치적 상황을 뒤바꾼 사건들은 순조 2년 순조비 안동 김문 김조순의 딸 삼간택을 반대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8) 등을 참조하였다.

- 5) 정조 4~5년경 척신이 된 홍국영을 정계에서 축출하는 데 공을 세웠던 청론 세력으로는 沈樂洙를 들 수 있다. 청론 세력 내에서는 전주 이문 李濡 후손인 ‘李最中·李義翊 사건’과 광산 김문 ‘金夏材 사건’ 등을 겪은 후 청풍 김문 김종수 세력이 浮上하였다(김정자, 『正祖代 前半期の 政局動向과 政治勢力의 變化(Ⅰ)』, 『한국학논총』 3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2; 『正祖代 前半期の 政局動向과 政治勢力의 變化(Ⅱ)』, 『조선시대사학보』 78, 조선시대사학회, 2016 참조).
- 6) 유봉학, 『19세기 전반 세도정국의 동향과 연암일파』, 『동양학』 1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8; 『燕巖一派 北學思想研究』, 일지사, 1995; 『개혁신과 갈등의 시대-정조와 19세기』, 신구문화사, 2009; 장기준, 『純祖 初期(1800~1806) 政局의 動向과 勢道政權의 形成』, 고려대 석사논문, 1993; 권오영, 『金漢祿(1722~1790)의 사상과 정치적 歷程』, 『조선시대사학보』 33, 조선시대사학회, 2005;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 『민족문화논총』 7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8; 김용흠, 『19세기 전반 세도정치의 형성과 정치운영』, 『한국사연구』 132, 한국사연구회, 2006; 박현모, 『정조 사후 63년』, 창비, 2011; 최성환, 『순조대 전반기 정국 변동과 의리론의 추이』, 『한국사연구』 180, 2018; 『沈煥之의 정치 생애와 벽파 의리』, 『대동문화연구』 10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임혜련, 『정조 말~순조 초 金健淳의 행보와 辛酉邪獄』, 『한국학논총』 51,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9; 김정자, 『순조 전반기 정국의 동향과 李審度 獄事의 전말-『親鞠日記』와 『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참조.

했던 ‘權裕 사건’과 순조 5년 ‘金達淳 사건’, 순조 6년 ‘丙寅更化’로 이어졌다. ‘병인경화’는 ‘벽파정권’을 반대하는 노론 내 외척 세력인 혜경궁·가순궁·순조비 집안과 노·소론, 남인 내의 ‘시파’ 세력과 일부의 ‘벽파’ 세력과 ‘청론’·‘청의’ 세력들이 협력하여 정국과 정치세력의 변화를 이룬 사건이었다⁷⁾

‘벽파정권’의 핵심인 노론 내 외척 세력 정순왕후 경주 김문 金龜柱·金漢祿 집안과 노론 내 벽파 沈煥之·권유 세력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자, 당시에 처분을 받지 않고 정계에 남아있던 일부 ‘벽파’·‘청론’·‘청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시파’ 세력들에 의해 논척을 당했다. ‘병인경화’ 후, 외척 세력과 ‘시’·‘벽파’ 세력, ‘청론’ 세력 들은 정국의 동향과 정치세력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 상황과 입장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순조 27~30년 孝明世子의 代理聽政이라는 변화의 시기를 주목할 수 있다.⁸⁾ 순조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효명세자가 대리청정하는 기간 동안 조정에서는 순조가 처분했던 ‘신유옥사’·‘병인경화’가 재론되며 정치세력간의 입장이 달라졌다. ‘병인경화’로 ‘벽파’ 세력이 축출되었지만 일부의 ‘벽파’·‘청론’ 세력과 관련된 이노근 사건, 이인부·신의학 등의 상서 사건 등이 발생했다. 그러나 효명세자는 3년 여만에 사망하고, 효명세자를 보필했던 측근 세력과 일부의 ‘청론’ 세력들은 ‘벽파’ 세력과 관련되었다는 역풍을 받았고 토죄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을 논척하는 신윤록·윤상도 상소가 나왔고, 순조에 의해 크게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처분이 이루어졌다.

7) 김정자, 『정조 후반 순조 초반 정치세력과 정국의 동향』, 『한국학논총』 50,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8 참조.

8) 효명세자 대리청정 기간의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였다(김문식,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문헌과 해석』 56권, 태학사, 2011; 심승구, 『효명세자의 삶과 예술』, 『한국무용연구』 제36권 4호, 한국무용연구학회, 2018). 19세기 정국과 사회경제의 변동에 관련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였다(유봉학, 『추사의 시대-정치적 추이와 추사 일문』,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이세영, 『19세기 전기 사회경제의 변동』,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최완수 역, 『秋史集』, 현암사, 2014).

헌종 즉위 후 헌종 6년 윤상도 사건이 재론되면서⁹⁾ 사건의 배후가 ‘벽파’계열의 金陽淳과 ‘청론’계열의 李止淵인 것으로 드러나며 순조와 효명세자가 처분했던 사안들이 다시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효명세자 대리청정 시기와 이후 일어났던 이인부·신의학 사건과 신윤록·윤상도 사건을 중심으로 순조 후반 헌종 연간의 정국 동향과 정치세력의 변화를 살펴볼 예정이다.

『조선왕조실록』·『일성록』·『승정원일기』 등의 사료와 『推案及鞫案』을 분석하였다. 『문과방목』·『사마방목』 등의 자료와 각 인물들의 문집¹⁰⁾과 일기 등을 통해 師承·連婚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외척·척신에 의한 세도정치만이 아닌 여러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 사례를 살펴보고, 순조 후반 헌종 연간의 정국 상황과 정치세력의 변화상이 더욱 풍부히 설명되기를 기대해 본다.

2. 효명세자 대리청정 시기 李寅溥, 李魯近, 愼宜學 사건

순조 후반 노론 외척 세력으로는 순조 비 집안의 金祖淳을 중심으로 한 안동 김문과 효명세자 비 집안의 趙萬永을 중심으로 한 풍양 조문을 위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효명세자 대리청정 이전 시기부터 양쪽 척신 세력을 중심으로 각각 노론 ‘청론’ 세력, 소론·남인 내 일부 세력이 연합하고 있었다. 이즈음 효명세자를 가까이 모시는 신하로는 ‘翼宗四閣臣’

9) ‘윤상도 옥사’를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19세기 前半 조선의 勢道政治體制 속에서 전개되었던 일련의 권력투쟁적 사건들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났던 것으로 보고, 추사 및 추사 일가의 정치적 가화를 3차에 걸친 것으로 구분, 각각 그 정치권력적 배경과 탄핵의 전개과정을 검토한 연구가 있다(안희순, 『추사 김정희와 윤상도 옥사, 그리고 정치권력』, 『東方學』,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3). 한편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을 독재로 설정하고, 그녀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 19세기 조선사회의 혼란을 살펴본 대중서도 있다(변원림, 『순원왕후 독재와 19세기 조선사회의 동요』, 일지사, 2012).

10) 金成愛, 『燕巖集』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2001; 金明晃, 『燕巖集』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2005 참조.

인 金鑑·徐俊輔·徐憲淳·金鼎集¹¹⁾ 등이 있었다.¹²⁾

대리청정 시기 정계에 진출한 세력들은 주로 안동 김문 외척 세력의 전횡에 대한 논척을 했다. 일례로, 순조 29년 7월에 남인 부호군 沈英錫이 호조판서 金敎根과 그 아들 金炳朝가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탐낸 일등을 논척했다.¹³⁾ 효명세자는 아비와 아들을 아울러 논핵했다면서 세도를 안정시키고 민심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으로 도리어 심영석을 북청부에 귀양보냈다. 남인 내에서 정언 韓鎭辰가 심영석을 구원하고 김교근을 성토하자 효명세자는 그 또한 진도군에 귀양보냈다. 옥당에서 연명으로 상서하여 심영석과 한진호를 구원하였으며, 부교리 李游夏도 그들을 구원하고 김교근을 성토하였다. 효명세자는 남을 무함만하고 調停할 줄을 모른다면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⁴⁾ 이와 동시에 효명세자는 형조판서 김교근을 黃海水使로 임명하는 처분을 내렸지만, 김교근이 수을

11) 김로(본관 연안, 영의정 金燧의 손자, 처부 韓用龜)·徐俊輔(본관 대구, 부 徐有隣, 생부 徐有防, 처부 李正模(영의정 李秉模의 형))·徐憲淳(본관 대구, 판서 徐有寧의 손자)·金鼎集(본관 경주, 좌의정 金思穆의 손자)의 여동생은 소론계 鄭元容의 큰 아들 鄭基世와 혼인하여 큰 며느리가 되고, 남동생은 金中集이다(정원용, 국역 『경산일록』3, 8책, 보고사, 1999, 232쪽). 김정집의 처부가 李若愚이다(金鼎集, 『石世遺稿』, 한국문집총간 속 129; 張星德 『石世遺稿』해제, 한국고전번역원). 이약우의 할아버지는 정조 연간 좌의정을 역임한 소론 李性源이며, 아버지는 돈녕부도정 李洛秀이고, 어머니는 徐有後의 딸이다. 이약우는 규장각대교 李崑秀에게 입양되었다.

12) 1829년 1월에 소론 대사헌 朴綺壽(부 朴宗臣, 조부 朴左源)가 대궐 進饌 준비 시 많은 女伶의 궁궐 출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자(『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1월 10일 乙巳), 효명세자는 박기수와 친한 정원용을 대사간으로 제수하여 박기수를 구제하는지 구제하지 않는 지를 보았다. 2월에 정원용은 소를 올려 “박기수의 상소는 근심과 사랑에서 나왔으니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요청하였고, 4월에 김로와 서준보가 정원용을 만나러 와서 “세자의 마음이 아직도 어른께 쏠려 있어 국정 일을 맡길 생각이 있셨습니다.···(정원용이) 도승지에 배수될 것이고···나와 같이 참여하여 중요한 국무를 듣는다면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나 (정원용이) 놀라움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여러 차례 사양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정원용, 국역 『경산일록』 4책, 보고사, 1999, 114~117쪽).

13)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7월 20일 壬子.

14) 『대동패림』 10 순조기사 21 기축년 1829, 순조 29 7월 225쪽(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패림 번역팀, 『稗林』, 민속원, 2009).

따르지 않자 웅진부에 유배 보냈다가 10여일 후 석방시켰다. 이때 효명세자는 근일에 김교근을 重用하였기 때문에 남인 세력들[彼輩]이 날조하고 무함하는 욕을 보였고, 김교근이 귀양 가 있는 것은 자신의 본심이 아니고 저 무리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⁵⁾ 효명세자는 김교근을 귀양보내는 처분을 했다가 얼마 안 되어 석방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일이 있는 후, 연이은 상서와 추국사건이 일어났다. 첫 번째로 순조 29년 8월에 대사성 李寅溥가 土類를 권장하고 淸議를 분둔우기를 요청하는 상서를 올렸다[土類淸議].¹⁶⁾ 梅山 洪直弼은 이지연의 행장에서 이인부의 상소에 대해 정조 연간 ‘청론’ 세력을 등용하려는 ‘어진 이를 우선하고 척리를 멀리한다’는 ‘우현좌척’의 宗旨¹⁷⁾와는 반대로 ‘어진 이를 멀리하고 척리를 우선한다’는 ‘左賢右戚’을 종지로 삼았다고 지적했다.¹⁸⁾ 이인부의 상소는 안동 김문과 반남 박문 외척 세력의 입장을 대변했다며 일부의 ‘청론’ 세력에게 논척당했다. 후임 대사성에는 노론 내 외척인 풍양 조문 趙得永이 임명되었다.¹⁹⁾

- 15)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8월 24일 乙酉; 28일 己丑; 9월 9일 庚子, “以雍津府投界罪人金敎根到配 狀達 令曰 “此重臣之於投界 是豈余樂爲也哉 以近日嚮用之故 遭彼輩構誣之辱 余心之駭惋既如此 重臣之悲冤當如何 若又使此重臣久滯於外 非但非余本心 亦足以適中彼輩之願 前判書金敎根 特爲分揀放送”.
- 16)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8월 24일 乙酉. 이인부(본관 한산)의 처는 안동 김문 金簡行之 손녀이자, 金履錫의 딸이었다. 후술할 金學淳과는 처남·매부 지간이 된다. 김이석의 누이가 朴相喆과 혼인한다. 박상철은 영조의 셋째 딸인 和平翁主의 남편 金성위 박명원의 繼子였다. 반남 박문과도 연결된다 ([그림][安東 金門②] 참조). 효명세자 사후, 순조 30년 5월에 교리 尹錫永는 이인부의 상소가 사류·청류를 언급했지만 군부를 기만하고 조정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논핵했다(『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5월 30일 丙戌).
- 17) 『弘齋全書』 卷 168 日得錄 八 “物不可以終棄 人不可以永錮 近日疏滯之政 蓋亦不得已也 除非劇逆應坐 則并令還付原籍 予有斟量而然 不知者以爲上意欲用戚里中黷累人 故先爲此疏滯之政以倡之 左賢右戚之弊 予於初元處分 已有嚴防而峻攻者 今予卽古予 何故遽變前見 爲此苟且回刻之事耶 臨御十八年 誠信尙未孚於廷臣 此固予自反處 而亦不滿一笑”
- 18)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卷之五十 「右議政李公行狀」, 한국문집총간296, 한국고전번역원, “先是李寅溥進一疏于小朝 卽蒙三銓特除 其辭以摠攬權綱 左賢右戚爲宗旨 仍請明示好惡.”
- 19) 『승정원일기』 순조 29년 11월 19일 기유.

두 번째로 9월에 이노근의 흉서와 관련한 사건이 추국으로 진행되었다.²⁰⁾ 그는 첫째로 부도한 흉언을 써서 평소 원한이 있던 洪一喆·李敦信·李福信·李楹·尹在善 다섯 사람과 함께 붙잡혀 들어갈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²¹⁾ 둘째로 서자였던 그는 嫡家の 조카인 李福信을 무함한 것이라고 진술했다.²²⁾ 셋째로 그는 申綱·黃允中이라는 유생의 일과²³⁾ 김교근·김병조 부자, 李龍秀²⁴⁾를 논척했다. 넷째로 그는 여러 조씨가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이 많으며, ‘권세로 兩朝를 흔들었다[權搖兩朝]’는 흉언을 하였다. 이러한 흉언을 한 이노근은 순조와 효명세자에게 대역부도한 죄를 지은 것에 해당했고,²⁵⁾ 『大明律』 『謀反大逆』 조와 『死囚覆奏待報』 조에 따라 9월 27일 서소문 밖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不待時로 능지처사되었다.²⁶⁾ 이 사건은 순조 초반 ‘벽파정권’에 협조했던 이병모의 후손 중 서자였던 이노근이 적자였던 조카 이

20)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推案及鞫案』 27, 순조 3, 284책, 아세아문화사, 1983, 861쪽 “己丑 大逆不道罪人魯近鞫案”; 국역 『推案及鞫案』 81, 흐름, 2014, 201~224쪽. 이 사건은 『推鞫日記』 제 15책에도 실려 있다(각사등록 78, 국사편찬위원회, 1994).

21) 국역 『推案及鞫案』 81, 흐름, 2014, 208쪽.

22) 이복신은 영의정 李秉模의 아들 李魯益의 양자였고 처부가 안동 김문 金履載였다.

23) 순조 25년(1825)에 풍덕을 송도에 합치게 되면서 향교가 없어지고 위패를 땅에 묻는 일이 발생하자, 이 일을 반대하려고 여론을 선동하다가 문제가 되었던 인물들이다(국역 『推案及鞫案』 81, 흐름, 208쪽 각주 참조).

24) 이용수는 연안 이문 李端相의 후손으로, 正祖 世孫傳 李敏輔의 손자이자 李肇源의 아들이었다. 이용수의 처부는 풍양 조문 趙鎭宅으로, 처조부는 趙暉의 동생 趙정이었다. 이용수는 이 일을 당한 이후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다고 한다(홍직필, 『매산집』 제2권 詩 「유월 십일에 성백 원석과 임사옥 상현 서제 약필과 함께 청수동에서 놀다 기축년[六月之旬偕成伯元石及林士玉 象鉉 庶弟若弼遊淸修洞 己丑]」, 한국고전번역원).

25)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推案及鞫案』 27, 순조 3, 284책, “己丑 大逆不道罪人魯近鞫案”, 아세아문화사, 1983, 867쪽 “問曰諸趙之說何也 識書之說何言也 供曰 趙氏多顯而俗語稱好爲趙故亨之矣 問曰 權搖 兩朝何說也 供曰 聞當時有名多昵侍之時故言之矣”; 국역 『推案及鞫案』 81, 흐름, 2014, 221쪽 “李魯近結案”; 222~224쪽.

26) 『승정원일기』 순조 29년 9월 26일 정사, “義禁府 大逆不道罪人魯近年三十九矣 結案白等.”

복신과 관련되는 안동 김문 金履載, 김교근·김병조 부자와 풍양 조문 趙鎭宅과 관련된 연안 이문 李肇源·이용수 부자 등 양쪽 외척 세력과 일부 ‘청론’ 세력 모두를 논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신의학 상서 사건’이 일어났다. 부호군 신의학은 순조 즉위년(1800)인 庚申年 이진과 이후를 나누어 ‘청론’ 李書九와 ‘벽파’ 심환지의 功過를 가려야한다고 주장하며 상서를 올렸다.²⁷⁾ 그는 정조 24년(1800) 5월에 있었던 ‘五晦筵敎’²⁸⁾에 대해 효명세자의 대리 이후에 한번 아되는 일이 마땅함으로 아된 것이라고 했다.²⁹⁾ 그는 ‘오회연교’의 내용이 자파의 이해에 따라 해석되고, 순조 초년 ‘신유옥사’와 ‘병인경화’로 왜곡된 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서구·심환지를 君子·陽·善으로, 김이재·尹行恂을 小人·陰·惡으로 보았고, 윤행임을 ‘도깨비’라고까지 지적했다.³⁰⁾

앞서 ‘오회연교’ 때 김이재는 소론 ‘벽파’ 李晩秀를 논척하여 정조의

27) 『승정원일기』 순조 29년 11월 17일 정미 “副護軍愼宜學書…粵在庚申 尤眷眷於義理二字 以至五晦筵敎出 而首尾累千百言 丁寧反復 仍命藏之史庫 義理由此益明 世道賴以底定 可謂建天地而不悖 俟百世而不惑者也 其時故相臣 李書九一疏 對揚聖敎 受批隆重之後 于今數十餘年 寥寥無聞 無復以五晦筵敎 爲邸下誦之者 可勝歎哉 惟此義理 若至晦塞 則世道日下 士習日渝 終難復堯舜之治矣”;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11월 17일 丁未 “王世子詣禁衛營 鞠問愼宜學 【判府事南公轍 委官左議政李相璜 判義禁李義甲 知義禁李止淵 同義禁白東蓮, 李寅溥】 仍令待明日推鞠”

28) 정조 24년(1800) 5월 그믐날에 정조가 筵席에서 내린 하교다. 노론 김이재가 소론 이만수를 논척하자, 정조는 모든 신하들에게 예전의 習俗을 고치겠다면서, 노·소론, 남인, 시·벽파 등을 막론하고 조제하여 탕평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의리를 내세웠다(박광용, 최성환 박사논문 참조).

29)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推案及鞫案』 27, 순조 3, “己丑 罪人宜學宋守謙等鞫案”, 아세아문화사, 1983, 888쪽 “問 五晦筵敎 今爲三十年 而三十年間 胡無一言 今乃云 今日不言則將抱於無窮之恨云 其前不言 何無所恨 而今日不言 必云 抱恨耶 供 其前年條 稍近而代理後 則年條漸遠 不可無此一言 而適在外任 今始陳書 矣身年近六十 今若不言 則恐抱無窮之恨 故有所仰陳之矣”; 국역 『推案及鞫案』 81, 흐름, 2014, 319~321쪽.

30)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推案及鞫案』 27, 순조 3, “己丑 罪人宜學宋守謙等鞫案”, 아세아문화사, 1983, 978쪽 “罪人宜學結案”; 국역 『推案及鞫案』 81, 흐름, 2014, 236, 265, 309, 310쪽.

조제하며 탕평하려 한 뜻을 따르지 않아 죄를 얻었던 사실이 있었다.³¹⁾ 연안 이문 이만수는 순조 초 ‘벽파정권’에 협조했던 소론 대신 李時秀의 동생이었고, 처부가 서명선이었다. 정조는 노론 ‘벽파’ 심환지에게 보내는 어찰에서 “이조판서 이만수가 명목상으로 다른 색목이지만 실제로는 ‘벽파’에 가깝다”고 하였다. 또한 정조는 심환지에게 “예로부터 세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 되는 이를 다른 색목이라는 이유로 배척하지 않았고, ‘벽파’에 가까운 사람은 마치 우리 편 사람인 것처럼 더욱 보호하고 아껴야 한다”고 하였으며, “김이재가 ‘풍속을 바로잡는다 [矯俗]’는 두 글자를 집어내어 반대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하니 얼마나 근심스러운가”라고 적어 보낸 일이 있었다.³²⁾ 신의학은 ‘오회연교’ 때 김이재가 이만수를 논척하며 정조의 의리 탕평에 반대했던 사실을 효명세자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었다.

효명세자는 신의학의 상서가 지극히 해괴하다며 친히 문책하겠다고 명했다.³³⁾ 6번째 심문에서 신의학은 이조의 낭청 宋守謙에게 상서를 보였다고 진술했고, 신의학과 송수점의 대질 심문에서 신의학은 ‘李穡瑞’와 ‘而習大監’이 상서를 궁금해 했다는 대화를 언급했으나, 송수점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신의학은 “수두룩한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을 말하더라도 무슨 해로움이 있겠냐”고 했으나, 송수점은 두 사람에게 대해서 말한 적이 없으며 상서 원고도 먼저 보여 달라고 한 적이

31) 『승정원일기』 정조 24년 5월 29일 경술 “修撰金履載疏”; 5월 30일 신해 “吏曹判書李晩秀疏”

32) 백승호·장유승 옮김, 『正祖御札帖』(上,下),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진재교·안대회·이상하·김문식 지음, “정조 24년 5월 30일 아침” 『정조어찰첩』,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511~514쪽; 김정자, 위의 논문, 2018, 467쪽 재인용.

33)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卷之五十 「右議政李公行狀」, 한국문집총간296, 한국고전번역원 「晉用士類 而愼宜學適投凶書 鞫覈而置法焉 盖公於李疏出時得聞幾微 以事面與義諦 爲之調停而開導」; 趙斗淳, 『心庵遺稿』 卷之二十六 「吏曹判書金公諡狀」, 한국문집총간 307, 한국고전번역원 “先是 李大諫寅溥上書于小朝 請右賢左戚 明示好惡 人或疑其有機牙於其間 繼有愼宜學投匭 崇獎庚申以後用事者 世子鞫宜學誅之”

없다고 진술했다.³⁴⁾ 신의학이 말한 ‘이치서’는 전주 이문 李正觀으로 연암 박지원의 처남이자 知己였던 李在誠의 아들이었고,³⁵⁾ ‘이습대감’은 안동 김문 金學淳으로 앞서 나온 김이석의 아들이었다([그림] 참조).³⁶⁾

신의학은 거창 신문으로 端敬王后 신씨의 本族이었다.³⁷⁾ 그의 아버지 愼師稷은 정조 8년 정언으로, 외척 김귀주·‘벽파’ 김하재 등을 논척하고 정조의 의리 탕평에 협조하여 정국에 참여한 인물이었다.³⁸⁾ 신의학 상서는 정조 후반 정조의 의리 탕평에 협조하지 않았던 김이재 등과 순조

34) 국역 『推案及鞫案』 81, 흐름, 2014, 319~321쪽.

35) 박규수, 『환재집』 서 「절록한 환재 선생의 행장 초본 원 행장은 은재공이 찬술한 것이고, 문인 김윤식이 산삭 증보하였다.[節錄獻齋先生行狀草 原狀 溫齋公所撰 門人金允植刪補], 한국고전번역원 “외척으로는 念齋 李公이다.”; 박규수, 『환재집』 제8권 書牘 “[각주 3] 환재의 戚叔이며, 燕巖 朴趾源의 처남이자 知己였던 李在誠의 둘째 아들이다.”

36) 김학순의 시장을 조두순이 썼다. 김학순은 金壽恒의 후손으로 고조부 金昌翁, 증조부 金厚謙, 조부 金簡行(出 養謙), 부 金履錫, 외조부 洪壽泳(南陽)이었다. 그는 덕수 이문 澤堂 李植의 6대손인 李龍模의 딸과 혼인한다(趙斗淳, 『心庵遺稿』 卷之二十六 「吏曹判書金公諡狀」, 한국문집총간307, 한국고전번역원). 이용모의 아들 李魯春은 정조 8년 김하재·尹得孚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었다. 김학순의 아들 金淵根이 남양 홍씨 洪勝圭(처부가 金峻行의 아들 金履顯)의 딸과 혼인한다. 홍승규의 어머니가 전주 이문 광평대군과 이유의 손자이자 이최중의 형인 李明中의 딸이었다(김정자, 위의 논문, 2012 참조).

37) 『승정원일기』 순조 11년 5월 7일 갑신 “辛未五月初七日申時 上御德游堂 坐直承旨入侍時 右副承旨愼宜學…以次進伏訖 …上曰 承旨父名云何 宜學曰 師稷矣 上曰 兄弟幾人 宜學曰 五兄弟矣 上曰 名字誰某 宜學曰 宜默宜覺宜赫宜爽矣 上曰 承旨是端敬王后本族乎 宜學曰 然矣 上曰 爲府院君之子孫乎 宜學曰 旁孫矣 上曰 承旨年幾何 宜學曰 四十矣 上曰 有子幾人 而年幾何 名誰何 宜學曰 一子年十八而名永龜 一子爲三歲矣”. 또한 신의학의 형인 愼宜默은 작은 아버지인 愼師天의 양자로 들어갔다. 그의 외손자가 임헌회의 제자인 徐政淳이었기에, 그의 행장은 매산 홍직필의 제자인 鼓山 任憲晦가 써주었다(任憲晦, 『鼓山先生文集』 卷之十七, 「石城縣監愼公行狀」, 한국문집총간 314, 한국고전번역원; 金鎮玉, 『鼓山先生文集』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참조)

38) 『일성록』 정조 8년 10월 21일(계묘) “綱: 正言 愼師稷 以父病陳疏乞遞 仍論諸條 賜批 目: 疏略曰 臣庸愚滯劣 不堪臺垣峻選 而況臣父病勢沈篤 暫時難捨 亟削臣職 以便救護 祈免之章 不宜贅他 而龜柱之窮凶 夏賊之至慳 亟施當坐之律 以嚴懲討之意”; 정조 9년 2월 8일(무자) “綱: 有政 吏曹判書 李命植 進 目: …愼師稷爲龍岡縣令”

즉위 이후 외척으로 전신한 안동 김문 세력에 대한 논척이었다. 또한 그는 ‘신유옥사’와 ‘병인경화’를 겪으며 공로와 과실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부의 ‘벽파’·‘청론’ 세력들에 대한 신원을 요구하였고, 대리청정하고 있던 효명세자에게 순조가 처분했던 사안에 대해 번복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었다. 그는 ‘병인경화’ 정국에서 축출된 심환지에 대해서 신유년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보면 그 이전의 공로가 더 크다며, 권유의 상소가 나온 뒤에 역적이 된 것이라고 했고,³⁹⁾ 이서구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힘썼다[勤勞]’·‘임금의 뜻에 맞았다[許綸]’ 등의 내용으로 그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⁴⁰⁾

설령 효명세자가 이서구·심환지의 공과를 재론하고 싶었다라도 순조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차마 언급할 수도, 번복할 수도 없는 사안이었다. 신의학의 아버지인 신사직이 정조 8년에 김귀주·김하재를 논척한 일이 있었고, 그 또한 순조 초년 ‘벽파정권’을 형성했던 노론 외척 김한록·김귀주 집안과 ‘청론’·‘벽파’ 세력을 분리해서 이서구·심환지에 대한 신원을 요구하며, 외척 안동 김문 세력을 논척하는 ‘청론’을 주장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상소는 ‘병인경화’를 이뤄낸 노론 외척 안동 김문과 ‘시파’ 세력에게 위협으로 여겨졌던 것이다.⁴¹⁾ 신의학은 의리에 배치되고 國是를 번복시키려는 극악한 역적으로, 심환지와 같은 역적을 군자라고 한 홍역을 만들어 犯上不道한 죄로 처형되었다.⁴²⁾

한 달 후인 12월에 한성판윤 김이재가 상서하여 신의학 홍서에 대한 정세를 진달했다.⁴³⁾ 효명세자는 흉악한 무리들이 김한록·김귀주를 窩主로 삼고, 심환지·권유를 血黨으로 삼았다면서, 순조 30년간의 大義理를

39) 국역 『推案及鞫案』 81, 흐름, 2014, 341쪽.

40) 국역 『推案及鞫案』 81, 흐름, 2014, 324쪽; 350쪽 ‘愼宜學 結案’.

41) 신의학 옥사 이후 외척세도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척재(이서구)에게 추탈관작이란 철퇴가 가해지고 청론까지도 벽파로 치부해 버리면서 이후 특권세력의 정치 간여를 반대하는 사림청론의 정치적 입장도 점차 잊혀지게 된다(유봉학, 위의 책, 2009, 86, 105~107쪽).

42)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11월 28일 戊午.

43)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12월 12일 壬申.

천명하고 준수해서 大道에 나아가자고 답했다.

남인 정언 申大元이 신의학의 여러 자식들을 흠어서 귀양보내도록 청하고,⁴⁴⁾ 신의학의 친구 柳鼎養이 조문하고 통곡한 죄에 대한 처분을 청하는 상서를 올렸다.⁴⁵⁾ 효명세자는 신의학의 자식을 흠어서 귀양보내지 않고 향리로 방축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했고, 유정양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확실하지 않은 일을 끝까지 캐묻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신의학 상서 사건에 대해 노론 ‘시파’ 沈樂洙의 아들 沈魯崇은 “마침내 이인부와 신의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상소를 올린 일이 일어났다. 이로부터 나라와 더불어 병존할 수 없는 것이 김한록 안건이다.”라고 하였고, ‘시파’ 세력을 도록 내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언급했다.⁴⁶⁾ ‘시파’ 세력에 반대했던 신의학의 상서 사건 이후 옥당과 삼사, 판부사 南公轍과 좌의정 李相璜, 대사간 洪敬謨·李嘉愚 등이 이서구의 관작 추

44)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1월 15일 乙巳. 남인계 신대원(본관 寧海)에 대해서는 柳致明的 제자인 金道和(본관 義城)가 쓴 행장(『拓菴集』 卷三十五, 「侍講院弼善二慕齋申公[大元]行狀」, 한국문집총간 속 138~139, 한국고전번역원)과 南阜(본관 英陽)가 25세 때 남긴 시(『時庵集』 卷之一, 「挽申弼善 大元 丈 辛卯」, 한국문집총간 속 128, 395쪽, 한국고전번역원)가 있으며, 畿湖南人 許傳의 문인인 許薰(본관 金海)의 묘갈명이 있다(許薰, 『舫山集』 卷之二十一, 「通訓大夫 行侍講院弼善兼春秋館編修官 寧海申公墓碣銘 并序」, 한국문집총간 328, 한국고전번역원, 187쪽 “當翼宗代理時 賊臣宜學 上凶書 壞亂我國家大義理 卽伏法 黨魁尙蟠結 申公大元 直諫院 陳章指斥無少遺 小朝賜優批 眷遇方深 鶴駕遽昇 公又遭父憂 未卒喪而沒”; 金恩庭, 『舫山集』 해제, 2005, 한국고전번역원 참조);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 『민족문화논총』 7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참조.

45) 유정양은 도암 이재의 문인인 柳巖의 아들이었다. 앞서 吳斗寅의 후손인 正言 吳致淳(본관 海州)이 단서를 발설하였고(『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5월 11일 丁卯), 신대원이 직접 지목한 후, 양사와 옥당에서 유정양을 엄히 조사할 것을 건의했으나 효명세자는 사안이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1월 17일 丁未). 효명세자가 죽은 후, 지평 오치순은 약원제조 홍기섭을 엄중히 조사하기를 요청하고, 양사에서 함께하여 부제조 朴晦壽의 찬매도 요청했다(『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5월 11일 丁卯; 5월 12일 戊辰).

46) 심노승 지음·안대희 김보성 외 옮김, 『자저실기』, 휴머니스트, 2014, 288, 311쪽.

탈을 연이어 요청했다.⁴⁷⁾ 이중에서도 노론 남공철은 이서구와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파’ 입장에 서 있게 된 것이었다.⁴⁸⁾

신의학의 상서에 언급되었던 ‘이습대감’인 김학순의 손자 昌寧尉 金炳疇(金淵根의 아들)가 녀 달 후인 순조 30년 3월에 순조의 딸이자 효명세자의 누이인 福溫公主와 혼인하여 부마가 된다. 옹주와의 혼인을 통해 안동 김문 세력의 家勢는 더욱 공고히 될 수 있었다([그림][安東 金門②] 참조).⁴⁹⁾

이처럼 영조 후반의 외척 세력과 ‘시파’·‘벽파’, ‘청론’ 세력은 효명세자 대리청정 기간까지도 여러 정치적 사안에 따라 형태와 모습을 뒤바꾸며, 연이어 상서를 올렸다. 이인부·이노근·신의학 사건은 효명세자 대리청정 기간 양쪽 외척의 전횡을 서로 논핵하며 ‘청론’을 주장하였지만, 그 근본을 살펴보면 정조와 순조가 내린 처분에 대해 자파에 유리한 해석만을 하며 상대세력을 성토했던 것이었다. 양쪽 외척 세력과 관련된 노·소론, 남인 내 일부 세력에 대한 각각의 사안은 안동 김문과 풍양 조문 세력 모두가 그 배후로 지목될 수 있었다. 여러 신하들의 계속되는 추가 조사와 연좌, 토죄 요청에도 불구하고 효명세자는 정조의 ‘以熱治熱’의 정국 운용 방식⁵⁰⁾과 같이 이인부 등이 관련된 양쪽 세력 모두를 처분함

47)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11월 23일 癸丑, “玉堂(校理李是遠 副校理金弘根 修撰李竣祐 副修撰徐有贊) 聯劄”; “三司(掌令李鎭華, 正言金鎰理·吳致淳, 修撰閔英世) 合達”; 11월 24일 甲寅 “判府事南公轍 左議政李相璜聯劄”; 12월 3일 癸亥 “大司諫李嘉愚 陳書請李書九追奪 宜學諸子散配 答曰 ” 已諭於前答 勿煩”.

48) 유봉학, 앞의 책, 2009, 105~109쪽.

49)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3월 28일 丙辰 “行福溫公主駙馬三揀擇 敎曰 ” 福溫公主駙馬定於副司果金淵根子炳疇 令該曹舉行 封爵以昌寧尉爲之”

50) 정조는 한 쪽 당파를 단번에 정계에서 축출하는 숙종 연간의 환국이나 영조 연간의 무신난(영조 4년)·을해옥사(영조 31년)와 같은 ‘以水治熱’ 중심의 정국 운용이 아닌 한 쪽 당파의 의리로 다른 쪽 당파의 의리를 대응시켜 해소하는 ‘이열치열’의 방식으로 정국을 운용했다. 일례로, 정조는 즉위연인 ‘丙申獄事’와 정조 1년인 ‘丁酉逆獄’의 처분으로 노론 내 외척 흥인환과 김귀주 세력을, 권간 민항렬·홍상간 세력을, 소론·남인 내 조제환·이덕사와 이도현·이응원 등 사도세자 신원 세력을 ‘이열치열’의 방식으로 처분하고, 그 과정을 『明義錄』·『續明義錄』으로 남겼다(김정자, 위의 책, 대학사, 2011).

으로써 世臣과 世家를 불안하지 않도록 鎮安시키고 외척과 조정 신하들을 調停하는 정국운용을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효명세자 대리청정 이후 申允祿, 尹尙度 사건

순조 30년 5월 효명세자가 사망했다.⁵¹⁾ 효명세자의 측근 세력들과 수세에 몰려 있던 세력의 입장은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했다. 고리 尹錫永이 상소하여 김로가 土類를 핑계대어 김귀주·김한록·金鍾秀·심환지와 같은 일을 하며, 이인부·신의학을 끌어들여 군부를 기만했다고 논척했다. 6월에 순조는 약원제조였던 洪起燮을 삭직하고, 醫官이었던 李命運을 절도에 안치하며, 그 나머지는 찬배하도록 명했다.⁵²⁾

김노·홍기섭 세력은 이인부와 신의학 상서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어 ‘시과’ 세력에게 공격당했다. 먼저, 정언 申允祿이 7월 그믐 사이에 김노 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는 상소에서 김노가 효명세자를 지근에서 모시면서 호조의 일을 맡으며 국가의 경비를 크게 위축시켰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이인부·신의학 홍서 등은 홍기섭·趙秉鉉의 무리가 이지연의 집에서 여러 차례 모의한 것이며, 이러한 계책은 김노가 아닌 이지연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했다.⁵³⁾ 그는 이 무리들이 1천여금의 公貨를 제멋대로 쓰기까지 했으며, 趙秉鉉·이지연 외에 네 사람의 奸臣을 지목해서 죄를 바로 잡기를 요구하였다.⁵⁴⁾ ‘四奸’에 지목된 홍

51)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5월 6일 壬戌 “卯時 王世子薨逝于昌德宮之熙政堂”

52)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5월 30일 丙戌; 31권, 순조 30년 6월 6일 壬辰.

53) 이지연은 麓川 李濡의 후손으로 이지연 집안의 이최중·이유백이 정조 6년 소론 내 외척 세력과 노·소론 내 시과 세력을 논척했다(김정자, 위의 논문, 2012; 2016 참조).

54) 7월에 신윤록이 지목한 四奸는 김로·이인부·홍기섭·이유수였다(『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8월 28일 癸丑; 『승정원일기』 같은 날). 홍기섭(본관 남양, 조부 洪準海, 부 洪秉協, 외조부 趙曦)은 대호군으로 이듬해 8월 56세로 사망한다(『순조실록』 32권, 순조 31년 8월 14일 癸巳). 이유수는 남인이었다

기섭은 풍양 조문 효명세자빈 집안과 연혼 관계가 있었다. 그의 외조부가 趙曦이었고 외숙이 趙鎭寬이었으며 이중 사촌이 조만영·趙寅永이었다.⁵⁵⁾ 또한 捕將 李惟秀는 덕수 이문으로 남인 忠武公 李舜臣의 후손이었다.⁵⁶⁾ 순조는 효명세자 발인의 기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토 상소를 올린 죄가 무엄하다며, 8월에 신윤록을 鍾城府로 귀양보냈다.⁵⁷⁾

한편으로 신윤록의 상소 때문에 형조 판서였던 이지연이 引義하며 시골에 있자, 순조는 이지연을 나주 목사로 보임했다.⁵⁸⁾ 이처럼 효명세자의 사망 이후, 효명세자 측근 세력으로 김노·홍기섭 뿐 만이 아닌 풍양 조문 외척 세력 조병현과 ‘청론’계열 이지연에 대한 ‘시파’ 세력의 논척이 확대되어 갔다.⁵⁹⁾

(본관 덕수, 처부 水軍節度使 許冥).

55) 趙鎭寬, 『柯汀遺稿』, 한국문집총간 속 96; 徐仁淑, 『柯汀遺稿』 해제, 2012, 한국고전번역원 참조.

56) [음관] 『武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참조.

57)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8월 28일 癸丑 “方其做出之時 與洪起燮趙秉鉉輩 屢會於李止淵之家 爛漫計議 夫夫之所知也”; 『대동패림』 10 순조 기사 22 경인년 (1830, 순조 30) 8월 311쪽(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패림 번역팀, 『稗林』, 민속원, 2009); 純祖, 『純齋稿』 卷 20, 「判義禁府囚李止淵議處啓目」, 한국문집총간 속 120, 한국고전번역원 “此囚豈待捧供而知之 特爲在外慢命故耳 大抵供辭中又以人言爲說 然所謂李寅溥書一款 本是無証據抑勒之言 而又況寅溥處分 不以其書者乎 至於宜學書一款 尤爲可笑 必當知三字與莫須有三字何異 兩款明是齟齬者粧撰構誣 故向日下教中毛將焉傳者 政指此實際 而後昭晰又何如 則不思感祝出膺一味自引乎 然議處則適足使之引義 此供辭勿施 卽爲分揀放送 爲良如教”

58) 趙斗淳, 『心庵遺稿』 卷之二十六 「吏曹判書金公謚狀」, 한국문집총간307, 한국고전번역원 “至是正言申允祿 傳會禱張 攻公甚力 章留中月餘 竄允祿 屢降旨昭晰之曰 莫須有 又曰 明是齟齬者粧撰 至下廷尉問 謫羅州牧.”

59)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卷之五十 「右議政李公行狀」, 한국문집총간296, 한국고전번역원 “七月 拜冬至謝恩正使 有正言申允祿者 托以懲討金鑄 因劾奏公以爲粧出李寅溥書 而駟致宜學 則宜學之凶書 卽寅溥之餘旨 知寅溥之書 必當知宜學之凶書 傳會誣譏 語極憎毒 居月餘始下申疏爾則遞差四字之批 仍竄允祿上知公受誣 促令行公 公逡巡不膺命 連有問備禁推罷職之命 而旋即還叙 辭教隆摯 教曰 橫逆之構捏 旣昭晰而昭晰 則有何可引 又下王府問勘及納供 上別下恩教 引言者疏中語曰所謂李寅溥書 本是無證據抑勒之言 況其處分 不以其書者乎 至於宜學書一款 尤爲可笑 必當知三字 與莫須有何異 又曰明是齟齬者粧撰 故向教中毛將焉傳者 指此實際也 屢加慰勉 敦迫出膺 公進闕外 奉牌俟命 又下

그리고 효명세자 발인 전에 올라 온 또 하나의 상소 중에 副司果 윤상도의 상소가 있었다. 그는 소론 세력 호조판서 朴宗薰·전 유수 申緯·어영대장 柳相亮을 논척했다. 그는 西溪 朴世堂의 5대손인 호조판서 박종훈에 대해서는 권간인 김노와 연합하여 권력을 행사한 죄와 譯官에게 은자 4천량을 貸下하여 국고를 탕진한 죄가 있다고 했고, 전 유수 신위에 대해서는 춘천과 강화부에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재물을 탐한 죄와 여색과 관련된 죄, 효명세자 병환 중에 음주를 한 죄가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어영대장 유상량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權臣에게 아첨하고, 藥峴에 큰 집을 지을 정도의 부정부패를 자행했고, 營에 청동을 저축했다고 논척했다. 순조는 “윤상도란 자는 홀로 朝鮮의 臣子가 아닌가”라며 세 사람에게 대해 논척한 내용이 극도로 음험하고 참담하며, 우선 추자도로 정배하는 명을 내렸다.⁶⁰⁾

한편으로 순조는 다음 날 대호군 김노를 南海縣에 安置하라는 명과 전 참관 이인부를 田里로 放歸하라는 명을 내렸고, 전 포도대장 이유수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⁶¹⁾ 순조 또한 ‘이열치열’의 방식으로 윤상도와 김노·이인부 양쪽 세력 모두에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순조와 효명세자가 조제하고 진안했던 사안들이 9월 金魯敬에 대한 논척이 일어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사헌부 장령 權徽를 시작으로 사간원 대사간 安光直, 정언 成遂默, 대사헌 金陽淳이 김노경의 처벌을 요구했다.⁶²⁾ 영의정 남공철·좌의정 이상황·우의정 鄭晩錫도 순조 19년(1819) 기묘년 왕세자와 풍양 조문 조만영의 딸이 大禮를 올릴 즈음에 있었던 김노경의 흉측한 말이 순조 초년 순조 비 안동 김문 김조순 딸의 삼간택을 저지하려던 역적 권유보다 더 심하다며 국청을 요구했다. 김노경은 강진현 고금도에 위리안치 되었다.⁶³⁾

嚴敎 謫補羅州牧使.”

60)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8월 28일 癸丑.

61)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8월 29일 甲寅; 9월 1일 丙辰.

62)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9월 4일 己未; 9월 11일 丙寅.

63)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9월 25일 庚辰; 순조 30년 10월 2일 丙戌, “知敦寧金魯敬 施以絶島圍籬安置之典.”; 10월 8일 壬辰, “義禁府 以金魯敬圍籬安置

며칠 후, 영남 사람 지평 李佑伯이 ‘권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앞서 7월에 나왔던 신윤록의 상서로 이지연과 조병현이 무함 받았으며, 신윤록의 배후에 있는 김노경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순조는 김노경과 조병현 양쪽 세력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진정 시키고 편안히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비답했다.⁶⁴⁾

이우백의 상소로 경주 김문 김노경 집안, 안동 김문 김교근 집안, 연안 이문 이조원·이용수·이학수 집안까지 국청 요구가 확대되었다. 첫째로 김노경이 윤상도 상소의 배후로 지목되었다. 둘째로 김노경은 역적 권유의 간택저지 사건과 같은 일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셋째로 이노근 사건에도 언급되었던 이조원·이용수 부자와 이조원의 조카인 李鶴秀까지 거론되었다. 그는 김노경의 조카사위였다. 넷째로 앞서 처분을 받았던 남인계 심영석·한진호의 석방과 다섯째로 김교근 부자 치죄를 요청이 재론되었던 것이다.

순조 2년 김조순의 딸이 순조 비로 간택되는 상황을 반대했던 ‘권유 사건’은 ‘벽파정권’이 몰락하는 순조 5년 ‘김달순 사건’과 순조 6년 ‘병인경화’로 이어진 일이 있었다⁶⁵⁾ 그런데 효명세자가 죽은 후 순조가 復政한 이때 순조 2년과 유사한 형태로 제2의 ‘권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김노경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특히 김노경의 흉측한 딸이 문제였는데, 그 딸은 왕세자빈의 증조부인 조엄이 정조 초년 평안감사 시절 장오죄⁶⁶⁾를 저질렀던 인물이라는 이유로 세자빈 간택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김노경은 영조의 딸 화순옹주와 혼인한 月城尉 金漢薰 후손으로 김

于康津縣 古今島 啓”; 10월 8일 壬辰.

64)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卷之五十 「右議政李公行狀」, 한국문집총간296, 한국고전번역원 “時持平李佑伯昭辦公受誣 請鞫言者 批曰申允祿疏之陰譏奸巧已洞燭 而重臣本末 亦所稔知 其疏不應爲累”;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10월 13일 丁酉.

65) 김정자, 위의 논문, 『조선시대사학보』 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참조.

66) 영조 48년(1772) 조엄은 청명당 사건에도 연루되었고, 정조 즉위 초 흥봉환·홍인한 집안과도 연결되어 있었다(김정자, 위의 책, 2011, 참조); 『영조실록』 119권, 영조 48년 7월 3일 丙申; 『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5월 3일 癸酉; 39권, 정조 18년 1월 24일 壬子.

한록·김귀주 집안과는 선대에서부터 나뉘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김노경은 ‘벽파’ 세력이 정계에서 축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유 사건’과 같은 형태로, 같은 세력이라고 ‘시파’ 세력에게 논핵 당했던 것이었다.

한편, 같은 달 28일에 대사성 조병현은 상소하여 그의 선친인 조득영이 ‘병인병화’를 불러왔던 순조 6년 1월 15일에 올린 김달순 성토 상소를 언급하고,⁶⁷⁾ 자신이 무함을 받고 있다며 사직했다. 그러자 순조는 조득영·조병현 부자의 본말을 잘 알고 있다는 비답을 내렸다.⁶⁸⁾ 순조 30년 11월 25일 삼사의 지속적인 처분 요청에 순조는 김노경·윤상도에게 가시울타리를 둘러서 출입을 제한하는 荐棘의 처분을 추가하였다.

2년 뒤, 순조 32년(1832) 4월 김조순이 6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김조순 사후, 그 아들 金迪根이 안동 김문을 이끌어갔다. 순조는 이 해 7월에 이인부, 김교근·김병조 부자와 신윤록·김노·金元禧 등의 죄인들을 석방하라는 명을 내렸다. 같은 해 7월 30일 우의정 金履喬(김이재의 형)도 사망했다. 이듬해인 9월 순조는 영조의 탄신일을 맞이해 영조의 딸 화순옹주의 남편 월성위 김한신의 손자인 김노경을 석방하며, 4년 동안 바다섬에서 귀양살이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⁶⁹⁾ 효명세자 사후, 효명세자의 측근들이 논척을 받아 순조의 처분을 받고 유배를 갔지만, 3년이 안되어 김조순이 사망한 후 순조에 의해 사면 받고 석방되었던 것이다.

67) 『일성록』 순조 6년 1월 15일(계해) “刑曹參判 趙得永疏請右議政 金達淳嚴降處分賜批”. 같은 해 1월 28일에 대사헌 李義弼도 상소하여 체차해 주기를 청하였다. 그 또한 광평대군 이여의 후손으로서 이유의 증손이고 李顯崇의 손자이며, 대사간을 지낸 李存中의 아들이었다(한국고전번역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참조).

68)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10월 28일 壬子; 『승정원일기』 같은 날; 『대동패림』 순조기사 22 경인년(1830, 순조 30) 325~326쪽(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패림 번역팀, 『稗林』, 민속원, 2009); 趙秉鉉, 『成齋集』 卷之九, 『以大司成 辨申允祿誣疏 庚寅十月二十八日 大槩恩造雖極感惶 情地愈切危蹙 冒死瀝籲 乞赦嚴誅事』; 『成齋年譜』, 한국문집총간 301, 한국고전번역원.

69)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11월 25일 己卯; 32권, 순조 32년 4월 3일 己卯; 7월 27일 辛未; 7월 30일 甲戌; 33권, 순조 33년 9월 13일 庚辰.

이듬해인 순조 34년(1834) 순조가 죽고, 헌종이 즉위하였으며, 효명세자가 翼宗으로 추증되었다.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이 시행되자, 수세에 몰렸던 안동 김문은 정반대의 국면을 맞이하며 공세로 전환하게 되었고, 헌종 6년 윤상도 사건이 재론되었다.

4. 헌종 6년 윤상도 사건의 재론과 ‘벽파’계열·‘청론’계열의 분열

제2차 윤상도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조 비인 대왕대비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고, 헌종 3년(1837)에 영의정 이상황·우의정 이지연 등과 함께 9월 우의정에 박종훈이 임명되었으며, 형조판서에 조병현이 임명되었다.⁷⁰⁾ 11월에는 이조판서에 이지연의 동생 李紀淵이 임명되었다.⁷¹⁾

헌종 5년 1월 ‘譯官의 獄事’가 있었는데, 그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의금부사 김이재의 상소 때문에 우의정 이지연은 도성 밖으로 나가 대죄했다.⁷²⁾ 대왕대비는 이지연에게 사관을 보내어 불러들여 職事에 나가도록 했고, 도리어 김이재를 讞沿에 정배하도록 했다가 용서해주었다.⁷³⁾

우의정 이지연은 邪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청하였고,⁷⁴⁾ 순조 1년 신유년 때와 같이 사학과 관련된 사람들을 죄줄 것을 요청하여 ‘己亥迫害’가 일어났다. 일례로, 역관 劉進吉 사건도 남인 丁夏祥이 연관된 사학 관련 사건이었다.⁷⁵⁾ 정하상은 정약종의 아들이었고, 신유년 西學과

70) 『헌종실록』 4권, 헌종 3년 10월 20일 甲子.

71) 『대동패림』 11, 207~235쪽(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패림 번역팀, 『稗林』, 민속원, 2009).

72) 『헌종실록』 6권, 헌종 5년 1월 22일 己未; 1월 24일 辛酉.

73) 『헌종실록』 6권, 헌종 5년 1월 25일 壬戌; 『대동패림』 11, 245~252쪽(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패림 번역팀, 『稗林』, 민속원, 2009).

74) 『헌종실록』 6권, 헌종 5년 3월 5일 辛丑.

관련한 흥역의 후손이었기에 더욱 문제가 되었다.

같은 해 10월에 이지연은 상소를 올려서 우의정 사임을 요청했다.⁷⁶⁾ 그의 후임으로는 조인영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순원왕후의 수렴청정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헌종 6년(1840) 7월 행 대사헌 金弘根의 상소가 올라왔다. 그는 순조 30년에 있었던 윤상도와 김노경 문제를 재론하며 대왕대비께 여쭙어 속히 처분을 내려주길 청했다.⁷⁷⁾

신축년·임인년의 역적들을 영조께서 용서하셨으나 정조께서는 대대적인 정토를 행하셨고, 김한록의 여당을 정조께서 포용하여 용서하였으나 순조께서는 속히 주벌을 시행하셨고, 역적 권유의 선봉이 된 자를 순조께서 죄주지 않고 도리어 혹 진용하셨으나 익종께서는 대리 청정하시며 신의학의 옥사 때에 분명히 하유하셨으니, 이는 이른바 前聖·後聖이 道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오늘날 전하께서 본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저 두 역적은 전하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익종의 죄인이니, 중사의 만세를 위하여 반드시 정토해야할 자들입니다.⁷⁸⁾

영중추부사 이상황, 관중추부사 박종훈·이지연, 우의정 조인영이 시원 임 대신으로 인견했다. 대왕대비전이 대사헌의 상소를 내주고서 좌부승지 朴齊憲에게 읽으라고 명하고, 윤상도를 잡아와서 국문하도록 했으며,

75) 『헌종실록』 6권, 헌종 5년 8월 14일 丁丑 “鞫西洋人范世亨 羅伯多祿 鄭牙各伯及丁夏祥 劉進吉誅之”. 이경구, 「이벽, 황사영, 정하상의 친주교, 유교 인식의 동일성과 차이점」, 『敎會史研究』 52,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참조.

76) 『헌종실록』 6권, 헌종 5년 10월 21일 癸未.

77) 趙斗淳, 『心庵遺稿』 卷之二十五 「左議政金公諡狀」, 한국문집총간 307, 한국고전번역원 “庚子夏 復除大司憲 公於臺地 有私義 當免時 又有疾 上章乞懸車 因勉聖學 論宦官 辭甚切 盖以經席晉接久曠 而北寺爵賞頗濫 申復致意 至於屢千言 兼論尹尚度金魯敬事 上嘉納 見者莫不竦聳”; 梁基正, 『心庵遺稿』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2005 참조.

78) 『헌종실록』 7권, 헌종 6년 7월 10일 戊戌; 『대동패림』 11 헌종기사5 경자년(1840, 헌종 6) 364쪽. 이 사건은 『推鞫日記』 제 18책에도 실려 있다(각사등록 78, 국사편찬위원회, 1994).

김노경의 일도 마땅한 대로 처분하겠다고 하교하였다.⁷⁹⁾

앞서 제1차 윤상도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윤상도의 배후가 드러났다. 그 배후로 윤상도를 사주한 許晟을 延豐에서 붙잡아왔다.⁸⁰⁾ 허성은 壯洞의 김양순을 배후라고 진술했다. 김양순은 국청 과정 중에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조사 도중에 杖斃하여 죽음을 맞이했다.⁸¹⁾ 그는 안동 김문 金尙容의 후손으로 순조 30년 윤상도 사건 때 뿐만 아니라 헌종 4년 9월까지 대사헌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그의 형이 정조 후반 ‘벽파’ 인물 중에 하나로, 순조 21년(1821)에 사망한 전 이조판서 文簡公 金義淳이었다.⁸²⁾ 안동 김문 내 김흥근의 상소로 추국이 시작되었지만, 결과적

79) 『승정원일기』 헌종 6년 7월 10일 무술 “行都承旨金左根, 左承旨尹致定, 右承旨李源庚, 左副承旨朴齊憲, 右副承旨徐耆淳, 同副承旨李基華”. 좌부승지 朴齊憲은 반남 박문 朴準源의 증손이었다. 순조 6년의 ‘병인경화’ 당시 차대의 자리에서 승지 洪蕤周에게 명하여 도승지 金履永의 김한록 논척상소를 읽도록 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순조실록』 9권, 순조 6년 5월 13일 庚申).

80) 이윤선, 『공사기고』 1, 서울역사편찬원, 2017, 22~23쪽, “경자(헌종 6, 1840) 7월 29일 추국을 시작하였다. [윤상도를 추자도에서 붙잡아 왔다. 김정희와 그의 아버지 김노경은 臺閣의 계청이 있는 뒤 禮山으로 하향하였다가 역적의 진술에 언급되어 붙잡혀 왔다. 허성을 延豐[필자주: 충청도]에서 붙잡아 왔다. 전 이조 참판 김양순을 붙잡아 왔다.]…9월 4일 추국을 철회하였다. 김양순이 杖斃되었고, 김노경은 추탈하였다. 김정희는 제주 대정현에 위리안치되었다. 윤상도와 허성은 처형되었다”.

81) 『헌종실록』 7권, 헌종 6년 8월 27일 甲申 “鞠廳罪人金陽淳物故 陽淳爲許晟所引 屢被拷掠 不服而死”; 이러한 사실은 윤상도의 아들 윤한모의 공초를 통해 밝혀졌다([그림][安東 金門③] 참조).; 『대동패림』 11 헌종기사5 경자년(1840, 헌종 6) 8월 373쪽(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패림 번역팀, 『裨林』, 민속원, 2009).

82) 정조는 당시 시파가 뻘뻘한 상황에서 벽파는 늙고 힘없는 徐邁修, 어둡고 졸렬한 金義淳, 약하고 물러터진 李魯春 등 몇 명뿐이라고도 하였다(백승호·장유승 옮김, 『正祖御札帖』(上, 下),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진재교·안대회·이상하·김문식 지음, “정조 24년 5월 30일 아침” 『정조어찰첩』,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511~514쪽; 김정자, 위의 논문, 2018, 467쪽 재인용); 『순조실록』 24권, 순조 21년 8월 27일 甲辰, “知中樞府事李普天 前判書金義淳 奉朝賀李庚運 并卒.”; 27권, 순조 24년 10월 19일 戊寅; 김양순은 그의 형 김희순이 李明淵·洪蕤周 등과 교유하였기에 김희순의 신도비명을 홍석주에게 부탁하고 문집을 편찬하기도 하였다(金義淳, 『山木軒集』 한국문집

으로 안동 김문 내 김양순이 죽게된 것이었다.

김양순은 여러 번 고문 받았으나 승복하지 않고 죽었다. 그는 죽기 전에 김노경의 아들 金正喜가 허성에게 상소의 초본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허성은 김정희가 참여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⁸³⁾ 양사에서 聯筭하기를 김양순이 허성을 부추겨서 윤상도의 상소가 나오게 했으니 죄인의 처자를 아울러 죽이는 孥戮의 법을 시행해야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헌종은 경솔하게 시행할 법이 아니라고 비답했다.

헌종 6년 8월 실록에는 “윤상도를 대역부도로 능지처사했으며, 순조 30년 翼宗의 大喪 뒤에 윤상도가 전 臺官으로서 박종훈과 유상량을 논하였을 때 흉악한 말을 하였기에 순조가 減死하여 섬에 梟棘해 두었다가 이때 이르러 국문해서 정상을 알아내 응당 연좌시킬 자들을 흠어 유배하였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⁸⁴⁾ 윤상도는 結案에서 익종의 죽음으로 슬픔이 망극한 때 흉악한 말로 상소 올린 죄를 인정하고 죽음을 맞이했다.⁸⁵⁾

헌종도 순조처럼 일이 확대되지 않고 진정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사실 윤상도 사건의 배후가 김양순이라는 허성·윤상도·윤한모 등의 주장과 죽기 직전 김정희를 끌어들인 김양순의 주장 양쪽 모두 납득이 되지 않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의정 조인영도 차자를 올려 “윤상도와 허성의 입장에서는 김양순의 이름을 팔았어야 되나 김양순의 입장에서는 굳이 김정희의 이름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며 헌종에게 형정을 신중히 하길 요구하였다.⁸⁶⁾ 그러나 삼사는 합계하여 김정희의 국문을

공간 속 104, 한국고전번역원; 辛로사, 『山木軒集』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83) 『대동패림』 11 헌종기사5 경자년(1840, 헌종 6) 8월 378쪽(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패림 번역팀, 『稗林』, 민속원, 2009). 허성은 8월 30일 서소문 밖에서 능지처사했다(『헌종실록』 7권, 헌종 6년 8월 30일 丁亥).

84) 『헌종실록』 7권, 헌종 6년 8월 11일 戊辰.

85) 『승정원일기』 헌종 6년 8월 11일 무진.

86) 『승정원일기』 헌종 6년 9월 4일 신묘, “右議政趙寅永筭曰…苟非賊晟之愆憑指喉 則何能辦此 而度非晟所可動得 則不得不以陽淳之指意誘脅 然後可以信從 故度與晟共知此事出於陽淳 而供招之所昭載也 至於正喜之授意傳草 惟獨陽淳知之者 在晟當以陽淳藉賣 在陽淳不必以正喜藉賣也…”; 『대동패림』 11

요청했고,⁸⁷⁾ 이들의 논척은 이지연·이기연 형제에게로 향했다.

첫 번째로, 대사간 李在鶴이 9월 27일에 판부사 이지연이 국가에 화를 끼치고 세도를 어지럽히고 30년 동안 악을 돕고 쌓았다며 우선 門外黜送의 법을 시행하기를 요청하였고, 이조 판서 이기연에게는 우선 멀리 귀양보내는 법을 시행하기를 요청했다. 헌종은 “李判府事 형제를 오래 계속 쓴 것이 어떠하며 오로지 위임한 것이 어떠하기에 네가 쉽사리 論斷하는가. 논한 잘못은 우선 버려두고 어찌 이러한 조정의 체모가 있겠는가. 매우 놀랍다.”라며, 도리어 이재학에게 관리명단인 仕版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刊削의 법을 시행하라고 비답을 내렸다⁸⁸⁾ 용인 이문 이재학의 조부 李普溫은 정조 1년 ‘정유역옥’에 연루된 홍계희 집안의 洪啓能·閔弘燮과의 관련 혐의로 추자도에 정배되었다 풀려난 인물이었으며, 정조 17년 이후 정조가 사면시킨 인물들 중에 하나였다.⁸⁹⁾ 정조 20년 6월에 정조는 이보온의 아들 李根祐에게 그 아버가 사도세자 생전에 세자시강원의 宮官을 지내고, 정조의 동궁시절에도 宮官을 지낸 일을 언급하며 애석하게 여긴 일이 있었다.⁹⁰⁾ 같은 해 8월에 정조는 승지 이보온을 불러 민홍섭과의 관련 혐의를 직접 물어보았다. 이보온은 당시 고유의정 閔百祥과는 절친하였으나 민홍섭과는 상소 작성 문제로 絶縁하였으며, 그 증인으로 영돈녕부사 金履素가 있다고 언급하며 20여년 만에 민홍섭과의 관련을 부정한 일이 있었다.⁹¹⁾ 그는 20여 년 전 홍계희·민백상 등이 연루된 ‘정유역옥’과의 관련 혐의를 부정하고 안동 김문 김이소를 증인으로 내세웠을 뿐 아니라, 아들 이근호와 안동 김문 金履徽의 딸

헌종기사5 경자년(1840, 헌종 6) 9월 383쪽(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패림번역팀, 『稗林』, 민속원, 2009); 趙斗淳, 『心庵遺稿』 卷之二十四『領議政文忠趙公 寅永 神道碑 並序○丁卯』, 한국문집총간 307, 한국고전번역원, “庚子拜內醫院都提調 秋 有尹尙度 許晟獄 時株連逮繫者 證援多中絶 公曰 獄者天下平也 上筭請欽恤從疑 拜宗廟署禁衛營都提調.”

87) 『헌종실록』 7권, 헌종 6년 9월 5일 壬辰.

88) 『헌종실록』 7권, 헌종 6년 9월 27일 甲寅.

89) 『정조실록』 4권, 정조 1년 8월 18일 辛亥; 37권, 정조 17년 4월 22일 甲申.

90) 『일성록』 정조 20년 6월 19일(계사).

91) 『일성록』 정조 20년 8월 7일(기묘).

을 혼인시켜 그 연혼관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수찬 沈承澤도 윤상도·윤한모 부자,⁹²⁾ 허성, 이지연·이기연 형제가 수작한 죄상이 있다고 상소했다. 심승택의 외조부는 김상용의 7대손 金協淳이었다.⁹³⁾ 헌종은 도리어 심승택에게 파직의 법을 시행하는 비답을 내렸다.⁹⁴⁾

세 번째로, 대사헌 李義準이 상소하여 헌종에게 이재학과 심승택에게 내린 명을 거두고, 이지연 형제에게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하여 言路를 열어서 國是를 바르게 하기를 요청하였다. 헌종은 번거롭게 하지 말라며, 대사헌 이희준의 요청대로 직임에서 물러나는 체차를 허락하였다.⁹⁵⁾ 당시 헌종의 처분을 보면, 제2차 윤상도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 6일 대왕대비가 이지연 형제는 익종의 대리청정 정국운용을 방해한 세력이라며 10여 년 동안 마음에 숨기고 참아왔던 하교를 내렸다. 이로써 대왕대비에 의해 판부사 이지연과 이조 판서 이기연은 모두 유배형을 감형해서 鄕里로 放逐되었다.⁹⁶⁾ 대왕대비는 효명세자 대리청정 기간 ‘이인부·신의학 사건’과 순조 30년 ‘윤상도 사건’에서도 죄를 받지 않고 헌종 3년에도 우의정과 이조판서에 임명했던 이지연·이기

92) 『대동패림』 11 헌종기사5 경자년(1840, 헌종 6) 9월 383쪽(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패림 번역팀, 『稗林』, 민속원, 2009) “금부가 윤상도의 아들 尹翰模·尹錫模·尹學模를 교형에 처하였다.”

93) 『일성록』 정조 20년 3월 2일(무신); 심승택은 본관이 청송이고, 6대조가 영의정 沈涑이다. 처부가 申在順(본관 평산)이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참조).

94) 『헌종실록』 7권, 헌종 6년 9월 29일 丙辰.

95) 『승정원일기』 헌종 6년 10월 1일 정사 “伏願殿下 亟收兩臣削罷之命 李止淵兄弟 亟施當勘之律 以開言路 以正國是焉 臣無任云云 答曰 省疏具悉 卿言之如此 又不知何故也 本職許遞”. 이희준(본관 한산)은 행대사헌으로 계속 상소를 올렸다(10월 25일 신사; 27일 계미; 28일 갑신; 11월 10일 병신).

96) 『헌종실록』 7권, 헌종 6년 10월 6일 壬戌; 14일 庚午. 정원용은 “11월 2일 판부사 이지연과 판서 이기연이 지난 9월 27일 대간의 논의를 만났다. 그 후 대비께서 엄히 처분하여 대간의 계사가 펼쳐지는 것을 끊고 이지연을 명천에 유배하였다”고 적고 있다(정원용, 국역 『경산일록』 3, 7책, 보고서, 1999, 113쪽).

연 형제를 撤簾하기 직전 처분을 내렸고, 안동 김문 김홍근, 이재학·심승택·이희준 등이 연이어 올린 상소에 대한 처분이었다.

다음날 이조판서에 반남 박문 가순궁 집안 朴準源의 손자이자 朴宗慶의 아들인 朴岐壽가 특별히 제수되었다.⁹⁷⁾ 삼사에서는 방축 죄인 이지연에게 우선 유배형 중 지정된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中途付處의 형전을 시행하기를 요청했다. 이때 소론 洪良浩의 손자 洪敬謨가 행대사헌이었고, 박준원의 딸과 혼인한 李堯憲의 아들 李鼎臣이 행대사간이었다.⁹⁸⁾ 노론 외척 내 안동 김문, 반남 박문 세력과 소론 내 일부 세력이 정국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결과 순조 6년의 ‘병인경화’와 같은 정국의 변화와 정치세력의 축출이 헌종 6년 경자년 가을[秋]에 재차 일어난 것이었다.⁹⁹⁾

이후에도 시임·원임 대신인 봉조하 남공철·영부사 이상황·판부사 박중훈·우의정 조인영과 옥당은 헌종에게 명명백백히 죄를 밝히고 벌주기를 요청하는 연차를 올렸다.¹⁰⁰⁾ 며칠 후 대왕대비는 방축한 죄인 이지연

97) 『승정원일기』 헌종 6년 10월 7일 계해.

98) 『대동패림』 11 헌종기사5 경자년(1840, 헌종 6) 9월 394~395쪽(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패림 번역팀, 『稗林』, 민속원, 2009).

99)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卷之五十 「右議政李公行狀 壬子」, 한국문집총간 296, 한국고전번역원 “庚子九月 大司諫李在鶴上章彈劾 譏斥一門 修撰沈承澤疏出而添入尹尙度鞫獄時事 繼有大司憲李義準之疏 於是大官唱之 三司繼之 禍將不測 過十九日下行遣之命 公竄明川 季氏安置古今島 公聞命無幾微色 執季氏手曰吾兄弟四十年聯武朝端 厚蒙國恩 一無報效 罪固當然 教諸子曰素患難行乎患難七字 正宜今日所勉 十分畏愼 看讀不倦也 范忠宣七十有萬里之行 今余所遭 較彼猶屬寬典 死生禍福天也 遂怡然就道 明川是關北惡地 人所不堪 而公處坎陷因 一似家居 胸中泊然無芥滯意 衣服枕几 皆用縞素 終日端坐 講讀周易 手寫筭疑二卷 雖子弟書札 只報安信 絕不及他語 辛丑八月十七日 卒于匪所 享年六十有五”; 趙斗淳, 『心庵遺稿』 卷之二十三 「右議政希谷李公墓表」, 한국문집총간 307, 한국고전번역원 “庚子秋 諫臣李在鶴 劾公及公季氏判書公 居二日 儒臣憲臣迭發 以尹尙度獄爲案 而曰休戚者舊 嫁訖延累 盖尙度於庚寅 聽許晟喉 彈近密二三臣 而語犯容躬 大不敬 及是詔獄也 公以原任與鞫季氏適長堂矣 忽蜚語扇而疑訛四集 事將不測 過十九日而始分謫 公得明川 既到杜門却掃 惟手易探蹟 成筭疑二卷 辛丑八月十七日 卒于鵬舍 春秋六十有五.”

100) 『헌종실록』 7권, 헌종 6년 10월 7일 癸亥; 8일 甲子.

은 명천부로 귀양보내는 법을 시행하고, 이기연은 絶島인 고금도에安置하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陞下한 뒤에 다시 거론하지 말도록 하교했다. 우의정 조인영은 이지연과 어려서부터 사귀었으나 죄범이 이 지경에 이를 줄은 몰랐다고 하며, 찬배와 도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아뢰었다.¹⁰¹⁾ 결국 이지연은 귀양지에서 사망했다.¹⁰²⁾

김홍근의 말대로 선대왕 때 용서한 일을 선대왕이 죽은 후, 다음으로 즉위하는 왕이 선대왕 때 용서한 일을 거론하여 징토했던 사실은 영조·정조·순조 초반을 말하는 것이었다.¹⁰³⁾ 새로 즉위한 왕의 징토는 즉위 초반 불안한 왕권의 확립을 위한 국왕권 행사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때 헌종은 국왕권을 행사해서 순조·익종이 용서한 일을 징토할 뜻이 없었던 것 같다.¹⁰⁴⁾ 도리어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하에서 안동 김문 세력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던 세력을 징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국왕이 행사해야 할 징토 권한을 순원왕후 철렴 직전에 사용한 것이었다. 순원왕후의 철렴 후 다시 뒤바뀔 수도 있는 정치적 상황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마지막 해에 안동 김문 김홍근의 요청으로 재론

101) 『헌종실록』 7권, 헌종 6년 10월 14일 庚午; 20일 丙子. 앞서 ‘신의학 사건’ 이후 이서구와 친분이 있던 남공철이 이서구의 추탈관작을 요청했던 것과 같이 제2차 ‘윤상도 사건’ 이후 이지연과 친분이 있던 조인영이 이지연의 추가 처분을 요청하는 정치적 분열 상황을 알 수 있다(유봉학, 앞의 책, 2009, 105-109쪽 “이러한 상흔은 척제의 삶과 함께 탕평정치에서 세도정치로의 변화, 나아가 사림정치와 청론의 붕괴라고 하는 순조대 이후 조선 정치의 거대한 변화과정과 그 속에서 야기된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02) 윤구해 오는 과정에서 함경감사 閔致成은 北兵使 尹禹鉉의 제반 절차와 판부사 호청을 문제 삼는 狀啓를 올리기도 하였다(『헌종실록』 8권, 헌종 7년 9월 12일 癸亥).

103) 정만조, 「英祖代 初半의 蕩平策과 蕩平派의 活動」, 『진단학보』 56, 1983;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태학사, 2011; 김정자, 위의 책, 태학사, 2011; 「순조 전반기 정국의 동향과 李審度 獄事의 전말－『親鞫日記』와 『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참조.

104) 『헌종실록』 16권, 헌종 15년 3월 6일 甲戌.

된 윤상도 사건으로 안동 김문 내에서 ‘벽파’인 김희순의 동생 김양순도 희생되었지만 전주 이문 내의 광평대군과 李濡의 후손 중 ‘청론’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연도 희생되었다. 어려서부터 사귀었다던 우의정 조인영도 이지연·이기연 형제를 구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노론 ‘벽파’계와 ‘청론’계가 분열하고, 소론·남인의 일부 세력들이 외척인 안동 김문·풍양 조문 세력으로 각기 나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헌종 7년 헌종의 親政 이후, 헌종도 제 세력 조정을 통해 세신과 세가를 보호하는 정국운용을 펼치게 된다.¹⁰⁵⁾ 헌종 15년에 가서 헌종은 이지연의 죄를 지워주라고 명하였다. 반면, 철종 1년에 순원왕후의 제2차 수렴청정 기간 순원왕후는 김양순의 사안을 停啓하라는 명을 내렸다.¹⁰⁶⁾

5. 맺음말

순조 1년 노론 외척 내 정순왕후 집안과 노론 벽파 세력 내 심환지 계열이 연합한 ‘벽파정권’은 노론 외척 내 혜경궁 집안과 노론 시파, 소론 사도세자 추승 세력, 남인 신서파 일부 세력을 정국에서 축출하는 ‘辛酉獄事’를 일으켰다. 순조 2년 순조비 안동 김문 김조순 딸의 삼간택을 반대한 ‘권유 사건’과 순조 5년 사도세자 대리청정 시기와 관련한 ‘김달순 사건’으로 순조 6년 ‘丙寅更化’가 일어났다. ‘병인경화’는 노론 외척 내 혜경궁 집안과 가순궁 집안, 순조비 집안과 노론 내 시파, 청론, 벽파 세력 일부와 소론·남인 내 일부 세력의 연합에 의해 가능했다.

‘병인경화’ 이후 순조는 이들 세력을 調劑하며, 世臣과 世家를 안정시키고 保全하는 정국을 운용하였다. 순조 27년~30년 대리청정을 하게

105) 김정자, 『正祖~憲宗代 ‘廣儲嗣’ 사안을 통해 본 정국과 정치세력의 추이-朴在源 사건과 李承憲 親鞫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총』 5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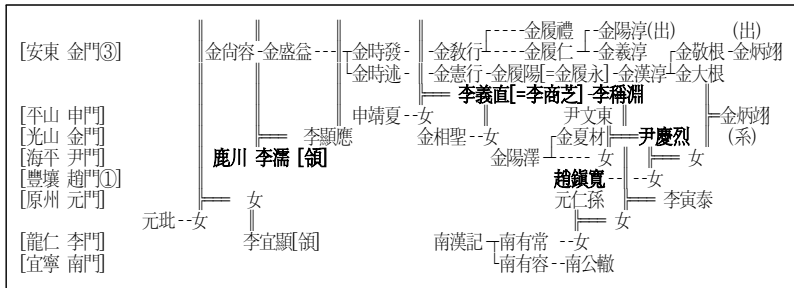
106) 『철종실록』 2권, 철종 1년 9월 27일 乙卯.

된 효명세자는 노론 외척 내 안동 김문과 시파 세력 보다는 노론 외척 내 풍양 조문과 ‘신유옥사’·‘병인경화’에 연루되어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던 ‘청론’과 ‘벽파’ 세력 일부, 소론·남인 내 일부 세력을 조제하여 등용시키고자 노력했다.

순조 29년 이인부는 노론 외척 내 안동 김문, 반남 박문 집안과 연혼 관계가 있으면서, 정조의 ‘우현좌척’에 관한 상소를 올려 일부 ‘청론’의 논척을 받았다. 사류에서 외척으로 변신한 당시 정치세력의 변화와 정국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노근은 이병모 집안의 庶子로, 노론 외척 풍양 조문과 안동 김문 양쪽 모두를 논척하였다. 신의학은 정조 24년의 ‘오회연교’를 30여년 만에 제기하며, 정조의 의리 탕평에 반대했던 세력으로 김이재를 논척하고, 일부의 ‘청론’·‘벽파’ 세력이었던 이서구·심환지의 공과를 재평가 해주기를 요구했다. 효명세자는 일련의 상소와 사건의 배후가 될 수 있었던 양쪽 외척 집안 모두에게 처분을 내리고, ‘청론’과 ‘벽파’ 일부, 소론·남인 내 일부 세력에게도 처분을 내리는 ‘이열치열’의 방식으로 정국을 운용하였다.

순조 30년 효명세자가 죽자, 효명세자 측근 세력이었던 김노·홍기섭 등이 이인부·신의학 상서의 배후로 지목되었다. 신윤록은 노론 외척 내 풍양 조문 조병현과 ‘청론’ 세력 이지연을 논척하는 상소를 올렸고, 윤상도는 소론 세력을 논척하는 상소를 올렸다. 경주 김문 金魯敬이 신윤록·윤상도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고, ‘권유 사건’ 처럼 왕세자비 간택을 저지한 일과 같은 형태로, 같은 세력이라고 논핵 당했던 것이었다. 순조는 윤상도와 김노경을 유배 보냈지만, 김조순이 사망한 후 김노경을 석방시켰다.

헌종 6년,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시기에 안동 김문 김홍근이 윤상도 사건을 재론하였다. 이 사건의 배후로 허성과 김양순, 김정희가 드러났고, 이지연·이기연 형제가 유배보내졌고, ‘벽파’계열의 김양순과 ‘청론’계열의 이지연이 사망하였다. 헌종 7년 헌종의 親政으로 정국의 상황과 정치세력은 다시 변화했다.



107) 『문과방목』·『사마방목』(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과 한국고전번역원의 문집 해제 등을 참조하여 간략히 작성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일성록』·『승정원일기』.
- 『大東稗林』; 경성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패림 번역팀, 『稗林』, 민속원, 2009.
- 『推案及鞫案』; 국역 『推案及鞫案』, 흐름, 2014.
- 『문과방목』·『사마방목』(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 『梅山先生文集』·『山木軒集』·『成齋集』·『純齋稿』·『拓菴集』·『柯汀遺稿』·『心庵遺稿』·『燕巖集』·『弘齋全書』·『職齋集』.
- 백승호·장유승 옮김, 『正祖御札帖』(上,下),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 정원용, 국역 『경산일록』 4책, 보고서, 1999.
- 김택영 저, 조남권 안의순 강소영 역, 『김택영의 조선시대사』 『韓史繫』, 태학사, 2001.
- 진재교·안대회·이상하·김문식 지음, 『정조어찰첩』,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 심노승 지음·안대회 김보성 외 옮김, 『자저실기』, 휴머니스트, 2014.
- 이윤선, 『공사기고』, 서울역사편찬원, 2017.
- 김명숙, 『19세기 정치론 연구』, 한양대 출판부, 2004.
- 유봉학,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 유봉학, 『개혁과 갈등의 시대 - 정조와 19세기』, 신구문화사, 2009.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정치사 1800~1863』 상·하, 청년사, 1990.
-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지음, 『정조와 정조 이후』, 역사비평사, 2017.
-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 『민족문화논총』 7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
구소, 2018.
- 김문식,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문헌과 해석』 56권, 태학사, 2011. 심승구, 『효명세자
의 삶과 예술』, 『한국무용연구』 제36권 4호, 한국무용연구학회, 2018.
- 김정자, 『英祖末~正祖 初의 政局과 政治勢力의 動向-英祖 46년(1770)경~正祖 元年
(1777)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태학사, 2011.
- 김정자, 『正祖代 前半期の 政局動向과 政治勢力의 變化(I)』, 『한국학논총』 3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2.
- 김정자, 『正祖代 前半期の 政局動向과 政治勢力의 變化(II)』, 『조선시대사학보』, 78, 조
선시대사학회, 2016.
- 김정자, 『정조 후반 순조 초반 정치세력과 정국의 동향』, 『한국학논총』 50, 국민대 한
국학연구소, 2018.
- 김정자, 『순조 전반기 정국의 동향과 李審度 獄事の 전말-『親鞫日記』와 『推案及鞫案』

- 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 김정자, 「正祖~憲宗代 ‘廣儲嗣’ 사안을 통해 본 정국과 정치세력의 추이- 朴在源 사건과 李承憲 親鞫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총』 5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 안외순, 「추사 김정희와 윤상도 옥사, 그리고 정치권력」, 『東方學』,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3.
- 오수창, 「제 2장 정국의 추이」, 『조선정치사 1800~1863』 상·하, 청년사, 1990.
- 유봉학, 「추사의 시대-정치적 추이와 추사 일문」,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 이경구, 「이벽, 황사영, 정하상의 천주교, 유교 인식의 동일성과 차이점」, 『敎會史研究』 52,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 임혜련, 「憲宗妃 孝定王后의 國婚과 南陽 洪氏의 역할」, 『史林』 62, 수선사학회, 2017.
- 임혜련, 「정조 말~순조 초 金健淳의 행보와 辛酉邪獄」, 『한국학논총』 51,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9.
- 최성환, 「순조대 전반기 정국 변동과 의리론의 추이」, 『한국사연구』 180, 2018.
- 최성환, 「沈煥之의 정치 생애와 벽파 의리」, 『대동문화연구』 10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국문초록

순조 1년 노론 외척 내 정순왕후 집안과 노론 벽파 내 심환지 계열이 연합한 ‘벽파정권’은 노론 외척 내 혜경궁 집안과 노론 시파, 소론 사도세자 추숭 세력, 남인 신서파 일부 세력을 정국에서 축출하는 ‘辛酉獄事’를 일으켰다. ‘권유 사건’과 ‘김달순 사건’ 이후, ‘丙寅更化’가 일어났다. ‘병인경화’는 노론 외척 내 혜경궁 집안과 가순궁 집안, 순조비 집안과 노론 내 시파, 청론 세력, 벽파 내 일부 세력과 소론·남인 내 일부 세력의 연합에 의해 가능했다.

순조는 이들 세력을 調劑하며, 世臣과 世家를 안정시키고 保全하는 정국을 운용했다. 효명세자는 대리청정 기간 노론 외척 내 세자빈 풍양 조문 세력과 ‘청론’과 ‘벽파’ 일부, 소론·남인 내 일부 세력을 정계에 진출시켰다.

이인부는 ‘右賢左戚’ 관련 상소로 일부 ‘청론’ 세력에게 논척 당했다. 이노근은 노론 외척 양쪽 모두를 논척했다. 신의학은 정조의 의리 탕평에 반대했던 세력으로 김이재를 논척하고, ‘청론’ 이서구와 ‘벽파’ 심환지의 공과를 재평가해 주기를 요구했다. 효명세자는 일련의 상소와 사건의 배후가 될 수 있었던 양쪽 외척 모두에게 처분을 내리고, ‘청론’과 ‘벽파’ 내 일부 세력, 소론·남인 내 일부 세력에게도 처분을 내리는 ‘이열치열’의 방식으로 정국을 운용했다.

효명세자가 죽자, 신윤록은 조병현·이지연을 논척하는 상소를 올렸고, 윤상도는 소론 세력을 논척하는 상소를 올렸다. 신윤록·윤상도 사건의 배후로 경주 김문 金魯敬이 유배를 당하지만, 김조순이 사망한 후 순조가 석방시킨다.

헌종 6년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시기 김홍근이 윤상도 사건을 재론하였고, 그 배후로 허성과 김양순, 김정희가 연루되었다. 더불어 이지연·이기연 형제가 유배 보내졌고, ‘벽파’계열의 김양순과 ‘청론’계열의 이지연이 사망하였다.

Abstract

Political factions in King Sunjo's later years, as well as King Heonjong's reign

- Examination of Crown Prince Hyo'myeong's overseeing of the government and the following periods, through texts such as *Chu'an-geup-Gug'an* -

Kim, Jeong-ja

In the first year of King Sunjo's reign, the house of Queen Jeongsun, inside the Noron party's in-law community, and the Shim Hwan-ji line affiliated with the Byeokpa faction within the Noron party, allied with each other to launch the so-called Byeokpa regime. Then leaders of that regime initiated the 'Shin'yu-year Purge[辛酉獄事], which was meant to drive members of the Hyegyeong-gung house within the Noron in-law community, the Shipa faction of the Noron party, group of people inside the Soron party sworn to honor the late Crown prince Sado, and the 'Shinseo' pocket of the Southerners, all away from the government. Then, after the 'Recommendation incident' in the 2nd year of King Sunjo's reign and the Kim Dal-sun scandal in the 5th, in the 6th year the so-called "Byeong'in-year Turnover" ("Byeong'in Gyeong'hwa, 丙寅更化") occurred. This incident was enabled by an alliance between many parties: the Hyegyeong-gung house and the Gasun-gung house among the Noron party's in-law groups, house of Sunjo's queen and the Shipa faction within the Noron party, the Cheong'ron group, some people of the Byeokpa faction, and also some of the Soron and Southerner parties' associates.

King Sunjo tried to regulate these factions, and respect the power of these influential officials and houses. From the 27th year and through the 30th of his reign, Crown prince Hyo'myeong, members of the Pung'yang Jo house (house of the Crown princess), some people of the Cheong'ron and Byeokpa factions, and those of the Soron and Southerners, all entered the government.

When Yi Yin-bu(李寅溥) submitted the 'Wu'hyeon Jwa'cheok(右賢左戚,

The Wise at the right and In-laws at the left)' appeal to the king, Cheong'ron party members were enraged. Yi Roh-geun(李魯近) blamed both of the in-law factions within the Noron party. Shin Eui-hak(愼宜學) criticised Kim Ih-jae(金履載) as representing a party which was against late King Jeongjo's righteous Tangpyeong cause, and called for the reinstatement of Yi Seo-gu(李書九) and Shim Hwan-ji(沈煥之)'s honor, who were both part of the Byeokpa party. Crown prince Hyo'myeong warned both of the aforementioned in-law factions as they would have probably been behind such series of critical appeals submitted to the king, and also sent messages to members of the Cheong'ron, Byeokpa, Soron and Southerners groups as well. His stance seems to have been that of 'dealing with fire with fire'(以熱治熱).'

When Crown prince Hyo'myeong died, Shin Yun-rok(申允祿) submitted an appeal criticising Jo Byeong-hyeon and Yi Ji-yeon, while Yun Sang-do(尹尙度) submitted an appeal criticising the Soron party. Named as the culprit behind these appeals, Kim Roh-gyeong(金魯敬) of the Gyeongju Kim house was exiled, but after Kim Jo-sun died, King Sunjo released him from his exile.

In the 6th year of King Heonjong's reign, when Queen Sun'weon was still overseeing the country, Kim Hong-geun requested review of the Yun Sang-do case, and people like Heo Seong, Kim Yang-sun and Kim Jeong-hi were implicated as conspirators behind that incident. The Andong Kim house exiled Yi Ji-yeon and Yi Gi-yeon brothers, in a campaign waged against all who were not siding with the Andong Kim house.

Key word : King Sunjo(純祖), Crown prince Hyo'myeong(孝明世子), King Heonjong(憲宗), Shin Eui-hak(愼宜學), Yoon Sang-do(尹尙度), 'Wu'hyeon Jwa'cheok(右賢左戚, The Wise at the right and In-laws at the left)', *Chu'an-geup-Gug'an*(推案及鞫案, Records of Investigation and Interrogation)

투고일 : 2020. 7. 7. 심사완료일 : 2020. 7. 30. 게재확정일 : 2020. 8. 7.

19세기 囚徒案 자료의 실태

수도(囚徒), 수도안(囚徒案),
수도성책(囚徒成冊), 수도기(囚徒記)

유승희(연대 법학연구원)



국가의 죄수 관리와 수도안의 기록

- 조선초기부터 형정의 집행과 죄수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함.
- 옥을 관리하는 관원의 경우 수감된 사람의 연월(年月)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
- 죄인을 수감할 때에는 반드시 죄명을 들어 수도안에 기록해야 했으며,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수감되지 않음.
- 죄를 속여서 함부로 수감할 경우 관원은 파직하고, 색리는 중벌에 처함. 만약 다른 죄명으로 억울하게 간혔을 경우 수도안을 근거로 해당 관원은 파직.
- 세종 대 각도에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으로 부처(付處)된 사람을 매월 말에 계달. 세조 9년 형조에서 전국의 수도인을 죄의 경중에 따라 소책자에 기록하여 국왕이 볼 수 있도록 함.
- 죄인의 수도 기록을 잃어버린 관리는 처벌
- 수도안은 날마다 수정하여 형조의 형방에 바치는 것이 원칙. 정조 9년 수도안에 기재된 죄인이 시수죄인 1인 뿐. 이에 승지에게 날마다 수도안을 가져와 보고하도록 지시. 수도안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전옥서 관원 처벌, 형방의 담당자는 유배형에 처함.

19세기 후반 죄수 수감 관련 수도안(囚徒案)

- 경상도 4건, 전라도 2건, 함경도 2건, 전옥서 1건

	서명	연도	내용	
1	囚徒	철종5 (1854)	경상도 淸道郡에서 관리하고 있던 죄수들의 인적사항 기재.	규장각 (奎 27506)
2	慶尙右兵營查事 罪人囚徒成冊	고종7 (1870)	7월 慶尙右兵營에서 晉州 趙鏞周 등이 投書 告變한 사건을 조사. 관련 죄인 40명, 고변인 6명, 죄인차지 죄수(牢囚)질 6명, 재도미포질(在逃未捕秩) 5명 등을 기록	규장각 (奎 17163)
3	囚徒案	고종연간 (1863-1907)	전라도 任實縣에서 처리한 죄수들의 인적사항과 罪名, 처벌 결과 등을 기록	규장각 (奎 12383)
4	慶尙道內各邑殺 獄罪人等始囚逃 躲年月日開錄成冊	고종 15 (1878)	慶尙監營에서 만든 탈옥하여 체포하지 못한 죄수들의 명단. 경상도 관찰사 박제인(朴齊寅)은 8개 지역(청도, 상주, 양산, 고성, 함안, 경산, 흥해, 경주) 10명의 죄수들을 기록하여 의정부에 보고	규장각 (奎 17161)

1854년 청도군 囚徒(奎 27506)

殺獄罪人李付善

乙巳四月十八日囚

右人段踢殺李宅坤罪

殺獄罪人金老郎

乙巳四月二十八日囚 己錄 啓

右人段打殺徐成寬罪

殺獄罪人金化宗

丁未十月十五日囚 己錄 啓

右人段打殺吳呂史罪

殺獄罪人具俊伊

己酉十一月二十七日囚

右人段踢殺金德男罪

殺獄罪人金呂史

癸丑八月初四日囚

右人段打殺金玄罪

定配罪人秋

京畿道振威縣來韓東彦

辛亥十一月初一日到配保授主人大丘禁軍洪日用

右人段莫重公貨邦移欠通罪

京畿道廣州府來延元吉

壬子二月二十五日到配保授主人業武吉用業

右人段以舊水爭灌事勝築李岳同而岳同被築後因病事內致斃罪

忠清道清州牧來尹子京

甲寅閏七月初二日到配保授主人驛吏尹用云

右人段難技騙財武斷行惡凌弱殘罪

時囚

徐達連崔殷增

閏七月十五日加囚

拘留

清州牧尹子京子閏七月十五日

官婢月仙 八月初八日加囚

右事其父到配屬耳旋即逃罪

官婢月仙

八月初八日加囚

右事相闖毆打罪

除達金斗燁

以緇閑罪中路逃罪

東上李小也

八月十二日加囚

右事稱以被打死使渠兄紛訴罪

右事不為使役逃亡罪

八月十六日加囚

右事互相闖關罪

龍山金在龜

八月十五日著加 將官廳保授

昌寧黃必昌

八月十六日加囚

金國傳

右事同 備衣道關

中東金休之

八月二十日具格加囚

右事迫待養母罪

右事以宋伍千惣招之不待罪

上邑俞卜先次知 拘留

俞卜先次知 夫保授

八月十五日

右事其夫待令次

保授夫尹用云母

八月十六日使令局

右事定亂罪令尹京待令局

東上李康局

八月十五日拘留

右事以李小也之被打死給呈罪



141051

放秩

上南金希遠 李周復

李周日 五月初一日柳囚

李根復

李仁復 五月十一日柳囚

右人段李小也之覓納間

東上金台史 五月二十九日囚

右事其子推納間

外西主人金命得 次知六月初八日囚

右事雇錢畢納間

龍山朴有鶴 六月初八日囚

右事乘矢四寸妹錢備報間

賊漢裴光日

朴洪文 六月初八日柳囚

右事偷竊罪

外西朴致遠 使令房拘留

右事大同錢奴刷間

將校李俊新

金鶴老

七月十六日柳囚

使令申日午

姑為冰棍分付出送

右事雜技人不為盡捉故放罪

下南林道哲

金石分

七月十六日使令房

二日放

右事雜技罪

上南朴五作次知

同日面主人保授

崔景文次知

右事雜技漢逃避不提罪

上南雜技接主人尹哥次知同日面主人保授

下吏柳在廷

七月十七日柳囚拘留

右事刷馬錢乾沒罪 閏七月初三日放

退校徐在能

七月十九日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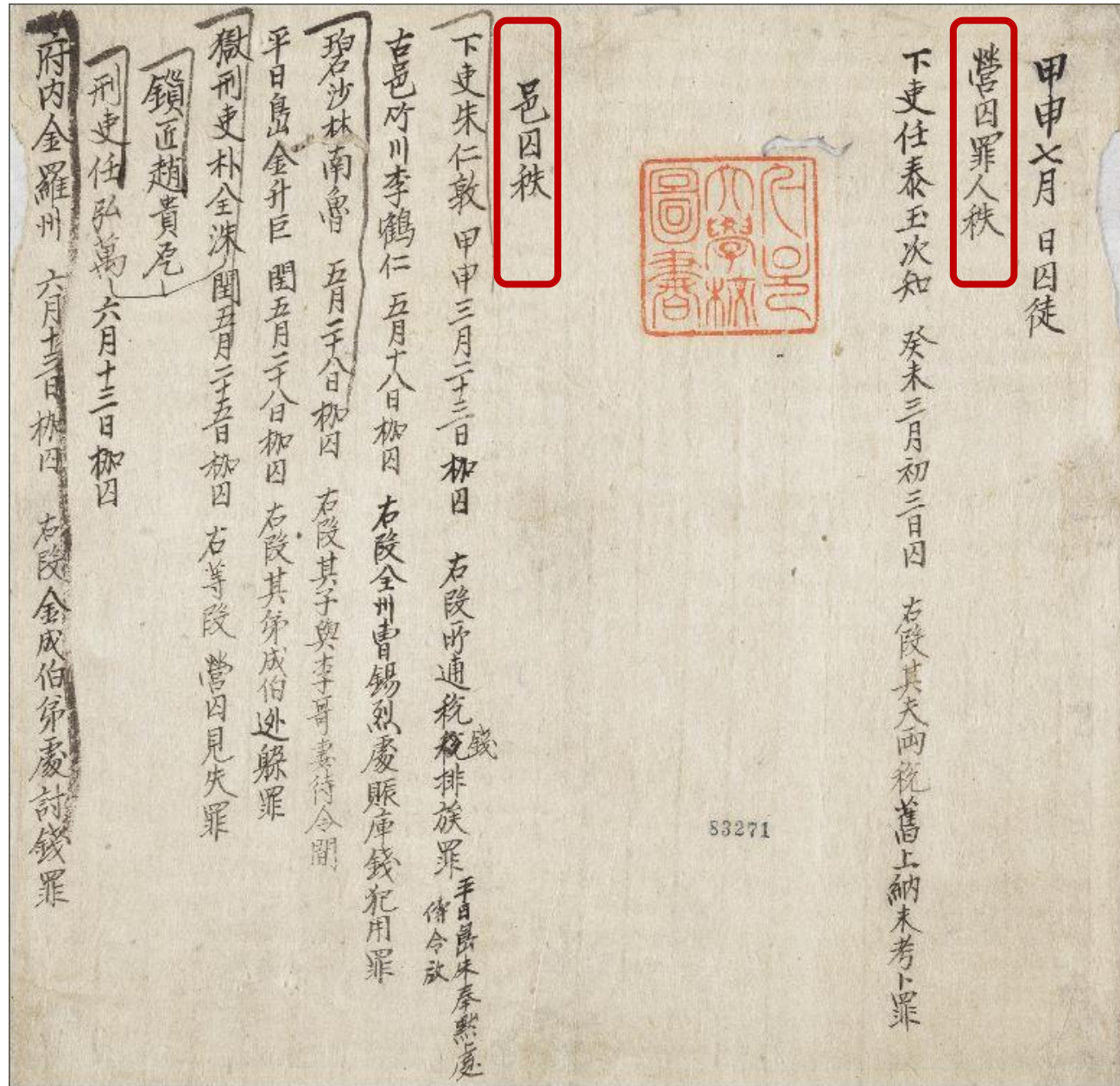
退校都寬氏

右事因循衣道題教自奉行

5	囚徒案	고종 21 (1884)	1884년(고종 21) 전라도 長興縣에서 작성한 죄수들에 대한 수도성책	규장각 (奎 27155)
6	咸鏡北道徒流定配 罪人等仍秩成冊	고종 24 (1887)	함경북도안무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남정순(南廷順)이 편찬한 도류죄인의 기록	규장각 (奎17164)
7	慶尙道內各邑去冬 三朔殺獄罪人等始 囚逃躲年月日及同 推拷訊次數開錄成 冊	고종 27 (1890)	1890년(고종 27) 1월 慶尙監營에서 道內各邑의 전 해 겨울 석달동안의 현재 수감중인 殺人에 관계된 죄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책	규장각 (奎 17162)
8	典獄署囚徒記	고종 26 (1889)	1889년(고종 26) 7월 23일, 25에서 29일까지의 전옥서 수감 죄인의 기록.	국립 중앙도서관
9	道內時囚罪人囚徒 成冊	고종 27 (1890)	1890년~1891년 함경도내 도류죄인 및 시수죄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	미국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囚徒案(장흥현) (奎 27155)

- 행형에 따른 분류
 - : 정배질, 시수(時囚) 죄인질, 구수(拘囚) 질, 구류 등으로 구분.
- 수감지역에 따른 분류
 - : 영수(營囚), 읍수(邑囚)
- 죄수기록:
 - 죄인의 출신 및 직역, 성명
 - 유배 및 수감된 날짜 및 수금, 이수(移囚) 날짜
 - 죄명, 형명, 석방여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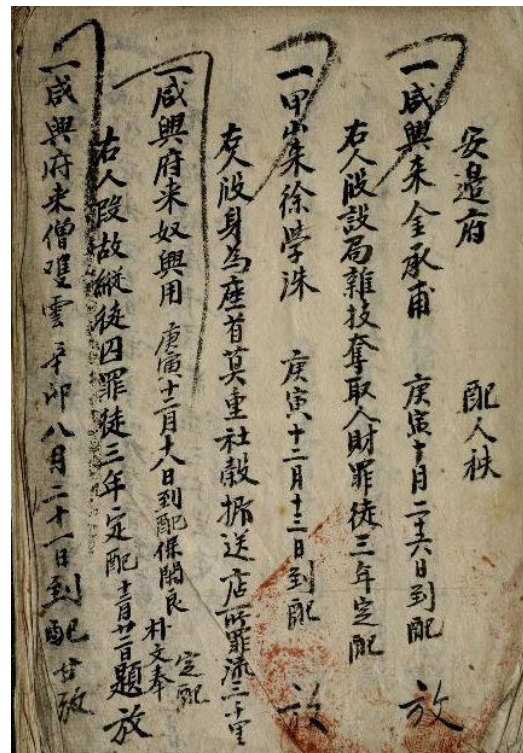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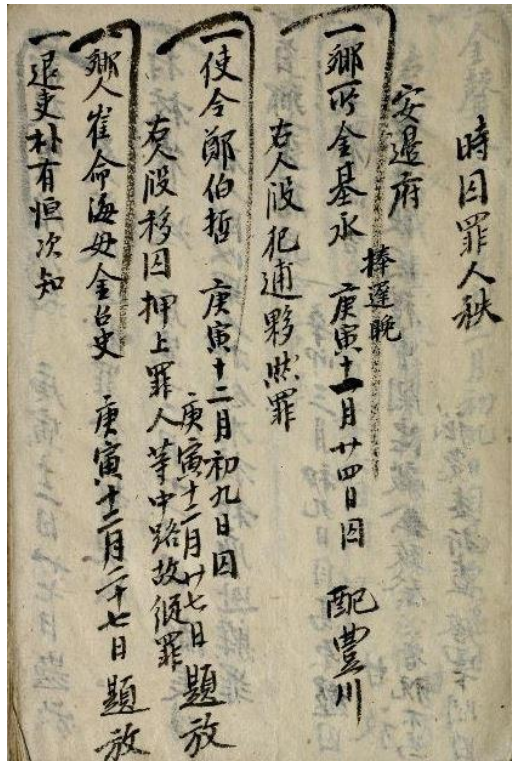


19세기 후반 함경도 도내 죄인의 실태

『道內時囚罪人囚徒成冊』

● 배인질 (配人秩)

- 함경도를 안변부(安邊府), 갑산부(甲山府), 삼수부(三水府), 장진부(長津府) 등등의 지역 별로 구분.
- 도배죄인의 출신지역 · 이름 · 유배된 날짜 · 죄명 · 행형 · 석방여부 기록.



● 시수죄인질 (時囚罪人秩)

- 덕원(德源), 고원(高原), 영흥(永興), 정평(定平), 함흥, 홍원, 북청, 이원, 단천, 갑산부, 삼수, 장진
- 죄수들의 죄명, 수금 날짜, 석방 여부나 날짜, 처리 결과, 차지나 보수(保囚) 여부 등 기록.

19세기 후반 함경도 도내 죄인의 실태

『道內時囚罪人囚徒成冊』

- 도·유형죄인 17명, 시수죄인 269명.
- 도유형 죄인
 - 안변부 5명, 갑산부 5명, 삼수부 5명, 장진부 2명.
 - 안변부- 도형수(徒刑囚) 2명, 유형수(流刑囚) 3명.
 - 갑산부- 도형수 1명, 유형수 4명.
 - 삼수부- 도형수 4명, 유형수 1명.
 - 장진부- 도형수 1명, 유형수 1명.
- 도형수의 경우 모두 도3년형, 유형수의 경우 모두 유3천리의 형량을 받음.
 - 도형수 8명중 6명: 노름장을 설치하여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 자.
 - 유형수의 경우: 부녀(婦女)를 범간(犯姦)한 죄(2건), 평민을 침학한 죄(3건), 민요(民擾)를 조사할 때 도망간 죄(3건), 위토(位土)를 미리 팔아 역사(驛事)를 혼란케 한 죄(1건).

19세기 후반 함경도 도내 죄인의 실태

- ❖ 『道內時囚罪人囚徒成冊』에 기재된 도류죄인의 경우 모두 함경도민이라는 점이 특징.
 - 안변부 도류죄인 5명 가운데 함흥 3명, 갑산 1명, 단천부 1명
 - 단천부에 사는 문춘엽의 경우 평민을 침학한 죄로 1891년 6월 수감 후 9월 12일 안변부에 정배.
 - 갑산부, 삼수부, 장진부 12명의 도류죄인의 경우 모두 함흥 거주.
 - 나졸 박태봉- 평민을 침학하여 1891년 8월 함흥부로 이수된 후 9월 9일 갑산부로 정배.
 - 승려 보임- 마을에 머물면서 부녀를 강간하여 1891년 8월 5일 수감 후 23일 갑산부로 정배.
- ❖ 이들은 모두 시수죄인질에도 기록되어 있어 이수현황과 정배과정을 살필 수 있음.

19세기 후반 함경도 도내 죄인의 실태

- ❖ 시수죄인 269명 가운데 신분 및 직역을 기록한 자가 83명.
 - 역참에 소속되어 공문을 변방에 전하는 발장이나 포교, 군교 등 33명.
 - 하리(下吏), 수리(首吏) 등 관아 아전 32명.
 - 관노, 교노 등 7명.
 - 양반 3명, 공시인 3명, 승려 2명, 기생, 무녀, 선주 각 1명.
- 토색, 구타, 침학, 업무상 과실, 관물 남용 등으로 수감.
- 시수죄인 가운데에는 며칠 뒤 석방된 자들도 있지만 강서, 해남, 하동, 순천 등으로 정배된 죄인도 기록.
- 남편을 죽인 시부(弑父) 죄인. 삼수에 사는 주조이의 경우 간부인 김창식과 동모하여 남편 박인협을 때려 죽였는데, 이때 따라간 간범이 4명이다. 모두 형구를 갖추어서 수감되었다가 형추 끝에 정범인 김창식과 주조이, 김진백, 김운택이 물고됨.